

노총연구원 신서 8

교원노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단체협약 체결을 중심으로 -

이일권

<제 목 차 례>

I . 서론	1
II . 교원노조법의 특징과 주요내용 및 문제	7
1. 교원노조법의 특징	7
2. 교원노조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7
III . 교원노조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고찰	29
1.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의 단체협약 체결과정	29
2. 시도 지역본부 단체협약 체결 현황	53
3. 교원노조 단체협약체결의 의의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66
IV . 교원노조법의 개정방안	71
1. 교원노조 가입자격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가입자격을 확대	71
2. 교원노조 전임자에 관한 규제 제거	74
3.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의 삭제	75
4. 단체교섭에 대한 구조의 변경	76
5.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규제 제거 ..	79
6. 교원노조법 제8조 정의행위 금지 조항의 삭제 ..	82

V. 결어 83

<참고문헌> 86

【부록】

- 2000년 교원노조 단체교섭(안) 89
- 교원노조 10대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부 검토의견 · 123
- 교원노조와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서(전문) 141

I. 서론

과거 국·공립·사립학교의 교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일체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동법 제 58조 제1항 4호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노동운동을 하면 면직이 되었다. 따라서 국·공립교원은 물론, 명백히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근로자 신분의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교조의 지속적인 투쟁과 1991년에 가입한 ILO로부터 교원의 단결권 인정에 대한 7차례의 권고와 1996년에 가입한 OECD같은 국제기구의 강력한 권고 등에 의해 1998년 10월 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여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에 관하여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단서조항(이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 교원노조법은 당초 노동계와 교원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노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특별법으로서 한국 최초로 단일 사업장에 복수노조¹⁾를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설립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고 학교 단위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임용권자의 허

1) 기업·사업단위 등에서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금지하여왔다. 1997년 3월 13일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다. 신생노조인 경우는 복수노조결성이 가능하며 1997년 12월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간 대타협의 일환으로 1998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라, 동시 1999년 7월 1일 한국교원노동조합(창립일 1999년 5월 16일)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창립일 5월 15일)이 설립되었다.

가사항으로 하고 있고, 교섭권한의 제3자 위임금지, 단체 교섭과정 중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 점, 학교 직원의 교원노조가입 제한, 단체교섭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근간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하며, 노동쟁의권이 없고, 교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담보하지 못한 교원노조법으로 법제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된 교원노조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이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교육환경개선 및 푸른교육의 실천, 교원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의 확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민주복지사회건설과 인간중심의 참된 민주환경실현, 국내외 노동 사회운동 및 국제교원운동과 연대를 강화를 통하여 평화적 민족통일과 세계평화의 달성을 설립목적으로 내걸고 1999년 5월 16일 출범하였다. 바야흐로 한교조와 전교조를 양측으로 한 복수교원노조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한교조와 전교조는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진통 끝에 ‘교원단체교섭안’을 확정하여 1999년 7월 17일 교원노조공동교섭단은 교원노조법 제6조 제3항과 동

법 시행령 제3조2)에 의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연명으로 교육부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개시하여 2000년 7월 3일 양 교원노조 위원장과 교육부장관이 「단체협약」에 서명·날인하고 단체교섭을 종결하였다.

그러나 교원노조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과정에서 사용자인 교육부는 노사교섭의 기본전제라 볼 수 있는 노사대등주의 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교원노조를 마치 산하단체를 다루는 듯한 교섭태도를 보였으며, 교섭사항

2) <교원노조법 제6조 제3항>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인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 1,4항>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도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의“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아주 축소 해석하여 교섭에 임하는 입장을 단체교섭이 마무리 될 때까지 견지하였다. 한편, 사립학교 경우는 교원노조가 사립학교 재단법인들의 전국적인 사학재단을 상대로 중앙교섭을 시도하였지만, 사학재단측에서 사용자 단체로서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자단체 공동교섭단 구성을 거부 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현행 교원노조법이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기본권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이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성실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단체협약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 조항이 아닌가 한다.³⁾

3)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어도 그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제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보다 발전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는데 걸맞는 교원노조법의 개정방안의 모색에 있어,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진행된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찰하고 교원노조법의 주요내용을 고찰, 교원노조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실상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법령·조례·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단체협약을 불이행하고, 무효화될 소지를 담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다.

Ⅱ. 교원노조법의 특징과 주요내용 및 문제

1. 교원노조법의 특징

교원노조법은 노동관계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노동조합의 설립, 단체교섭사항, 쟁의행위 금지 등의 사항은 교원노조법에 우선 적용하게 되고, 교원노조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2. 교원노조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1) 교원노조의 설립·운영 단위(동법 제4조)

조직형태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군·구 및 단위학교에서는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시·도 단위의 지부·분회 등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시행령 제2조). 이때 시·군·구 단위 또는 학교단위의 지부나 지회, 분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의 시행령 제2조는 지부 지회가 시·도 단위에 설치된 경우 노동부장관에 설립신고를 하여 정식으로 단위노동조합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교원의 경우에는 임금·근무조건 등이 전국단위에서 획일적으로 결정되며, 임용권도 광역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는 등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학교단위에서 교원노조를 허용할 경우에는 교원노조의 활동으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학교단위의 단위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전국·특별시·광역시·도 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하고 있다.⁴⁾

4) 김형배는 광역시·도 단위 이상으로 노조의 설립을 강제하는 이유로서는, 임금·근무조건 등이 전국단위에서 획일적으로 결정되며, 국·공립학교교원의 임용권도 광역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는 등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 및 학교단위에서 교원노조를 허용할 경우에는 교원노조의 활동으로 인하여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조직유형을 어떠한 것으로 할 것인가는 단결권의 향유주체인 교원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선택하

2) 가입자격(동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은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공민학교 교사, 고등공민학교 교사, 고등기술학교 교사, 특수학교 교사 등 각종학교 교사이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교수와 사용자⁵⁾의 지위에 있는 교장과 교감, 교직원^은 제외하고 있

여 결정할 문제로서, 이 법이 광역시·도 단위 이상의 조직유형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어느 노동조합의 조직유형이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되어 가장 적합할 것인가와 관련한 것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므로 ‘근로조건의 결정이 전국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광역시·도단위이상으로 조직유형을 강제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논거는 그 타당성이 없으며, 학생의 학습권 침해문제는 오히려 교원의 단체행동권 행사(쟁의행위의 허용)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노조조직 유형의 강제조항은 근로자의 단결권의 핵심내용 중 단결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김형배(1999), 노동법, 176면.

-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항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다.

교원노조법이 교원노조의 주체를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가장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학교의 교직원(학교 영양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법상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3) 노동조합전임자의 지위(동법 제5조)

노동조합의 전임자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전임자의 허가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허가하면 당해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봉급을 받지 못한다.⁶⁾ 그러나 승급 및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 6) 전임자에게 전임기간 중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전임자로 되는 절차도 임용권자의 허가가 아닌 단체협약으로 정해야 한다. 교원노조의 전임자에게도 일반노조와 같이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001년 12월 31일 전부터 임금지급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 아직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신생노조에게 있어서는 교육발전과 조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은 받지 아니한다.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노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합원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조직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상호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수령 금지와 임금지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헌법상」 제24조 2항과 제81조 제4호에서 제정되었는데, 동법 부칙 제6조 1항에 의하여 “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2001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평등권위반과 과잉침해금지의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① 평등권의 문제의 제기는 기존노조와 신규노조간에 동등한 취급을 하지 않는데 있다. 기존노조의 전임자는 임금요구 및 급여의 수령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게 하여, 불소급원칙에 더 나아가 위법적 행위를 계속해서 허용하고 신규노조에게 전임자의 임금요구 및 급여수령을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존중해야 할 평등질서에 반한다. ② 전임자 임금지급관행은 한 기업이나 사업장별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있는 노동관행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어떤 노동관행을 문제삼아 규제한다고 하면 기존노조, 신규노조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금지 해야한다. ③ 기존노조가 얻은 시행유보의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라는 점에서 신규노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 하였다.(김상호(1998), 노조전임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8, 9면 참조.)

노조전임자의 선임은 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며, 임용권자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노조업무에 전담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열성적인 교원의 노조전임 업무를 방해하여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노조전임자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으면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휴직명령에 의해서 일체의 개별적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원의 노동력 제공의무인 교육의 의무만을 면제받을 뿐 기초적인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산정, 퇴직금산정(계속근로년수산정), 연차유급휴가, 산재보호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봉급을 받지 못한다. 이는 일반 사업장에 있어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와 그 취지를 같이 한다.

4) 단체교섭의 구조(동법 제6조 1항)

교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전국단위는 교육부장관과 광역시·도 단위는 교육감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교원인 경우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연합하여 구성한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도록 되어있다.

사립학교의 경우도 학교단위의 노동조합이 불가능한 관계로 단체교섭의 사용자측은 개별 학교단위의 사용자가 아니다.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노동조합의 교섭통보를 받고 교섭단을 구성하지 않거나, 교섭단을 구성하고 있는 중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구제수단에 불과하고, 쟁의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감수하는 경우 달리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⁷⁾

5) 단체교섭의 담당자

노동조합 측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이고, 사용자측에서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의 경우

7) 전옥봉, 교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설, 노동법률, 1999.10. 50, 51면 참조.

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다. 특히 노동조합측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만(동법 제6조 2항)이 가능하므로 제3자나 상급단체에 대한 단체교섭의 위임이 불가능하다. 일반 노동조합의 경우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허용하면서도 교원노조에 대해서는 교섭위원을 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사용자측이나 노동조합측이 교섭을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위임 할 것인지는 -교섭위임이나 대리권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한 단체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교섭위임이 가능한 일반 노동조합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6) 단체교섭의 대상사항⁸⁾(동법 제6조 1항)

8) 단체교섭의 대상은 대판 1996. 2. 23, 94누9177 의해 채택된 3분체제에 의해 ①의무적 교섭대상, ②임의적 교섭대상, ③ 교섭 금지사항으로 나눈다. 교원노조가 교섭할 의무적 교섭대상은 「임금·근로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 해당되며, 임의적 교섭대상은 노조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단체교섭이 수행되며,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단체협약으로서 법적효력이 부여된다. 교섭 금지 대상사항은 조세감면, 구속자 석방, 임원진의 퇴진 및

조합원의 임금·근로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고 있고, 교육정책·교육과정 등의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섭대상을 이와 같이 한정하는 것은 교원의 근로조건이 주로 교육자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최소한도로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은 노사협의회의 대상사항은 될 수 있으므로 이들 사항의 결정과정에 교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성실교섭 의무(동법 제6조 4항)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

부당노동행위 요구 등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거나, 강행법규 및 공서양식에 위반하는 사항을 말한다.(더 자세한 것은 이상윤,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노동법학」 제10호, 107면 이하 참조)

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사용자측이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⁹⁾ 그러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교원들의 근로조건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단체교섭은 철저히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의 이해관계, 즉 국민여론이나 학부모의 의견이 교섭시 고려될 여지는 없다. 그와 같은 제3자의 이해관계는 학습권이나 공공의 복리를 고려하여 단체행동권의 제한에서나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8) 정치활동의 금지(노동법 제3조)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87조 단서에 따른 노조의 선거운동허용은 교원노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4조 3항)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노동법의 규율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정치적인 의사형성과 의사결정은 일반단체나 결사에 준하여 판단

9) 부당노동행위에 관해서는 교원노조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제86조가 적용된다.

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법은 노동시장에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서 근로조건 개선 향상을 도모하며, 근로자들의 집단적 자치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노동시장과 정치활동은 전혀 별개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독재정권 시절에 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반체제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 문제가 노동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 일반 단체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의 규율대상으로 삼는 것은 올바른 입법자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원노조의 정치활동금지 규정은 구법시대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노조에 대해 일반 노동조합처럼 정치활동을 허용할 것인지, 일반 노동조합과 차별을 두어 정치활동을 금지할 것인지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서 다루고, 이 경우 일반 노동조합에서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교원노조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9) 단체협약(동법 제7조)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어도 그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실상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법령·조례·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사후적으로 형해화 한다. 따라서 유효한 협약이 법령·조례·예산상의 이유로 무효화될 소지를 담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일단 협약에 의하여 확보된 임금수준도 사후적으로 변동된 예산사용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집단적 자치를 무의미하게 만들 소지를 갖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교섭 당시에 법령·조례·예산상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교섭당사자로서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확정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0)

10) 이상윤은 단체협약은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령과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간의 충돌문제가 발생하게 되

10) 쟁의 행위의 금지(동법 제8조, 제15조)

교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교원노조의 조합원은 일체의 쟁의행위

며, 단체협약과 법령의 내용이 상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법령의 상위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본의 지방공기업노사관계법에서는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입법권자가 이에 상치하는 내용의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받게 되어 있다. 교원노조법 제7조 1항이 삼권분립의 원칙 또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私人이 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대국민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법령이 자치규범에 불과한 단체협약보다 당연히 우선적인 법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법원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법령·조례 등에서 사용자에게 단체교섭대상에 관한 재량적 결정을 부여하고 있거나 확정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 재량적 처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교원노조법 제7조 2항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추상적·도덕적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는 그 결과여하를 불문하고 성실히 노력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한다. (이상윤,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대상”, 「노동법학」 제10호, 2000, 107면 이하. 참조)

가 금지된다.¹¹⁾ 따라서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조정이나 중

11) 김형배는 이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정하여진 자에 한하여는 근로 3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로 근로 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정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동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은 제33조 2항의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조항은 근로 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려는 것이므로 근로 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하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동조항은 업종과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근로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이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면 근로 3권이 가지는 권리의 일체성으로 인하여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일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원은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와는 달리 그 노무의 성질이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 교원들의 파업은 곧 수업의 거부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원에게는 단체행동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입

재절차가 개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수업의 거부를 가져와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위법한 쟁의 행위로서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단체행동의 금지가 교원노조와 조합원들에 대한 근로2권만의 보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원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¹²⁾의 경우와는 달리 노무의 제공이

법론적으로는 교원인 근로자들에게도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규정(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을 통하여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와 같이 직권중재를 인정하자는 견해와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8조가 위헌이나는 점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형배(1999), 노동법, 177 면)

12)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국공법 제3조, 제66조Ⅱ 단서 참조)이라 함은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을 말하며(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본문), 서무·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경리 및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

학생의 수업을 의미하므로 교원들의 파업은 곧 수업의 거부를 가져오므로 단체행동권을 제한 것이 교원노조법의 법 취지라 본다.

그러나 수업거부나 수업방해, 즉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정당한 쟁의 행위, 예를 들면 수업 종료 후 교육 이외의 잔무의 거부, 점심시간에 피케팅과 같은 의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이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11) 노동쟁의의 조정·중재제도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고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일반 사업장의 경우 당사자의 쌍방이나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에 의한 조정신청을 허용하는 것은 교섭시 불성실하거나 협약체결의 의사가 없는 당사자가

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승용자동차의 운전이 종사하는 자는 여기에서 제외된다(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단서).

바로 조정절차로 돌입하는 가능성을 주게되어 단체교섭을 무의미하게 할 소지가 있다. 다만 조정안이 작성되어도 이는 여전히 권고적 효력만을 갖게 되므로 교섭 당사자는 반드시 이에 따를 필요는 없다.

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거부한 경우, 당사자간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 또는 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를 개시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임의중재, 직권 중재를 가리지 않고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의 쟁의 행위가 중지되지만, 교원노조의 경우는 처음부터 쟁의행위가 금지되므로 임의중재에 회부되든 직권중재에 회부되든 관계없이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중재에 회부되어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여전히 효력을 갖는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중재재정은 효력을 갖게되고 당사자는 이에 구속된다. 따라서 교원노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필수적 공익사업에만 인정되는 직권 중재 내지 강제중재에 의하여, 그리고 쟁의행위 금지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제3자인 중앙노동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교원의 교육사업이 과연 필수적 공익사업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쟁의행위는 금지시켜 놓고서도 교섭당사자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이 없어서 이를 방치하면 분쟁상태가 지속되므로 분쟁해결을 위해 절충적으로 강제중재의 대상으로 삼은 듯하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보면 현행법상 강제중재가 허용되는 필수적 공익사업은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 시내버스 운송업,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은행사업, 통신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필수적 공익사업에서는 이들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사업에서의 쟁의행위는 공중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중 특히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면 공중의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롭거나 국민경제가 현저히 저해되기 때문에 강제중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중일상생활의 현저한 위태성과 국민경제의 현저한 저

해성의 특성 때문에 강제중재가 허용된다. 그러나 교육사업이 이와 같은 현저한 위태성과 현저한 저해성을 갖게 되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말하자면 필수적 공익사업과 교육사업은 강제중재를 허용할 만 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쟁의행위의 금지나 강제중재의 허용이 학습권의 보호에 있다는 주장도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

원래 쟁의 행위와 관련하여 기본권이 충돌한다면 교원측에서는 근로3권, 사용자측,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설립자나 경영자의 직업의 자유, 소유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국·공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기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직접 충돌하는 것이고, 학습권의 침해는 쟁의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로서 말하자면 쟁의행위의 제3자적 효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원들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근로3권이 직접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교원의 노동기본권 충돌시에 어느 것을 우선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타인의 기본권 충돌시 조화롭게 해결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공공복리의 차원에서나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쟁의행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면 이는 공공복리의 보호차원에서 제3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에 대해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2항의¹³⁾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사업을 필수적 공익사업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강제중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만일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절차적 문제 때문에 강제중재를 허용한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구성하는 화의기관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¹⁴⁾

13) 헌법 제37조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4) 김영문, 교원노조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간행논문, 2000.

◇ 교원노조법의 주요 내용표

구 분	교원노조(교섭·협약권)
설치근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기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인정
가입 및 조직	·교장·교감 및 대학교원 제외 ·시·도 및 전국단위
교섭근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섭목적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교섭당사자	노조대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사학연합체
교섭사항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교섭제외사항	규정 없음
교섭의 전개	협약체결권 인정
효력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우선
효력기간	2년 이내
조정심의기구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중앙)

출처 : 윤광희, 일본과 미국의 교직단체에 관한 연구, 2000.

◇ 교원노조와 일반노조간의 차이 비교표

구분	교원노조	일반노조
설립 단위	특별시·광역시·도·전국 단위(학교단위 불허)	자유설립주의(노동조합규약에 의함)
가입 자격	초·중등학교법상의 교원(교장, 교감, 교수 제외)	자유가입주의(사용자 제외)
전임자	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처리, 사용자로부터 무급여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사용자로부터 무급여
교섭 구조	노조대표자대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재단연합 ※ 복수노조일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2001년까지)	노조대표자 대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 ※ 양측 모두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 가능
교섭 원칙	일반노조원칙 외에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수렴 의무	신의성실, 권한남용금지, 교섭거부해태금지
교섭 사항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근로조건외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단체협약 효력	법령·조례·예산규정 관련 사항은 효력이 없으나 사용자에 대한 성실노력 의무 부과	교원노조와 같은 효력 배척사항은 없음. 동종 근로자 2/3이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인정
쟁의 행위	파업·태업·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인정(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 단,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방산물 생산자는 금지
조정 중재	중앙노동위원회 산하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조정신청기간은 30일	노동위원회 산하 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 조정신청기간은 10일(일반노조) 15일(공익사업노조)
정치 활동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제한규정 없음

※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산물 생산자는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0조).

Ⅲ. 교원노조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고찰

1.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의 단체협약 체결과정

1997년 7월 16일 교원노조(한교조, 전교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연명으로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단체교섭이 개시되었다. 6차례에 걸쳐 교섭관련 협의를 거쳐 1999년 9월 8일 제1차 본교섭위원회가 이루어졌다. 제1차 본교섭위원회에서는 교원노조가 단체교섭 요구안(208조 532항)을 제출하고, 그 동안 교섭관련협에서 합의된 사항을 추인하였다. 또한, 한교조와 전교조로 구성된 교원노조 공동교섭단이 사립중고등학교재단협의회를 방문 교섭요구서를 전달하였다. 이후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들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단체교섭 개시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행 교원노조법이 명백히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초학교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을 강제하고, 단위학교 단위의 교섭을 금지함으로써 인하여,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들이 단체교섭을 해태할 목적을 갖고 사용자단체 구성을 거부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기본권의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 1999년 9월 8일 1차 본교섭위원회 개최 이후의 단체
교섭 경과

일시	내용	장소	비고
9.15	1차 교섭실무소위원회	교육부 회의실	
9.21	2차 본교섭위원회	민주노총	교육부 불참
9.30.15시	2차 교섭실무소위원회	전교조 회의실	교육부 불참
9.30.18시	2차 본교섭위원회	민주노총 회의실	교육부 불참
10.6	3차 교섭실무소위원회	교육부	
10.8	2차 본교섭위원회	민주노총 회의실	교육부 불참
10.19	2차 본교섭위원회	민주노총 회의실	교육부 불참
10.28	2차 본교섭 개최 요구(5회)		
10.29	4차 교섭소위원회 개최	한교조 회의실	교섭의 제선정 원칙에 합의
11.4	5차 교섭소위원회 개최	교육부 회의실	
11.5	900여 개별 사학재단에 교섭 요구서를 발송함(1차)		
11.8	2차 본교섭 개최 요구(6회)		
11.12	6차 교섭소위원회 개최	교육부 회의실	
11.18	7차 교섭소위원회 개최	교육부 회의실	
11.20	2차 본교섭 개최 요구(7회)		교육부 불참
11.24	2차 본교섭 개최 요구(8회)		교육부 불참
11.29	2차 본교섭 개최 요구(9회)		교육부 불참
12. 3	2차 본교섭 개최 요구(10회)		교육부 불참
12.14	교원노조 조합원 소재 500여개별 사학재단에 단체교섭요구서 발송(2차)		단체 교섭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함.

- 1999년 10월 29일 개최된 제4차 교섭소위원회에서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교섭의제선정원칙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합의사항은 ①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 등에 질의한 후 유권해석 결과를 참고하여 교섭의제 선정 여부를 검토하되, 양 당사자 간 합의 시까지 이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기로 하고 우선, ②교원의 임금·후생복지에 관련된 사항과 교원노조 활동에 관한 사항만을 대상으로 교섭해 나가기로 잠정 합의했다.

교육부는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노조관례에 따라 단체교섭의 중요한 사항을 사용자 대표인 교육부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본교섭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최하자는 요구에 대해, 본교섭위원회 중심의 교섭은 교육부 장관과 실·국장 12명 등 양측에서 24명이 대규모로 참여하기 때문에 산적한 국정처리에 지장을 주고, 교섭 운영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7차례에 걸쳐 본교섭위원회 개최를 거부하였다. 교원노조는 1999년 12월 8일 사용자 대표인 김덕중 교육부장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함으로써 교섭이 중단되었다.¹⁵⁾

15) 교원노조는 2000년 3월 23일 단체교섭을 재개하면서 양 당

◇ 2000년 단체교섭 경과

- 개각으로 문용린 교육부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단체교섭 재개의 분위기가 마련되어, 2000년 3월 20일 한교조 임태룡 위원장, 전교조 이부영 위원장이 교육부 장관과 3차 회동하고, 예산요구서에 노·사간의 교섭결과를 단체협약 체결에 포함시켜 기획예산처에서 최종 편성하는 예산편성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 5월 20일까지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하고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 2000년 3월 23일 16시까지 6시간에 걸쳐 8차 교섭소위원회를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단체교섭 재개를 위한 합의서」 및 「제8차 교섭소위 합의서」¹⁶⁾에 합의하였다.

사자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소를 자진 취하하였으나, 서울지검은 ‘무혐의’종결 처리함.

16) 단체교섭 재개를 위한 합의서

교육부와 교원노조(전교조와 한교조를 말한다)는 1999년 7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6차례 교섭관련 협의를 거쳐 1999년 9월 8일 본교섭위원회 이후 7회의 교섭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1999년 11월 18일 개최된 제7차 교섭소위 이후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단체교섭을 재개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교원노조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1. 양 당사자는 예산 회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정부 예산 편성일정을 감안하여 2000년 5월 20일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양 당사자는 2000년 3월말 이전에 본교섭위원회를 1회 개최하는 조건으로 제8차 교섭소위원회를 3월 23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교섭소위원회를 주1회 운영한다.
3. 양 당사자는 3월 본교섭위원회 개최 이후 2000년 5월 20일까지 본교섭위원회를 3회(조인식 포함) 더 개최한다.
4. 2000년 5월 20일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그 후의 교섭 일정은 양 당사자들이 논의하여 그 결정되는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5. 양 당사자간에 동 합의를 3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본 합의사항의 이행을 증거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동 합의를 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로 상호 확인하기로 한다.

2000. 3.23 교육부 교섭소위 위원 교원노조 교섭소위 위원 제8차 교섭소위 합의서

- 1) 제2차 본교섭위원회는 2000년 3월 27일 개최한다.
- 2) 제2차 본교섭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2000년 3월 25일 제9차 교섭소위를 개최하되, 제9차 교섭소위에 한하여 위원은 양측 각 3인씩으로 한다.
- 3) 제9차 교섭소위에서는 제2차 본교섭소위원회에 관한 제반사

- 2000년 3월 25일 제9차 교섭소위원회가 교육부 16층 회의실에서 오전 9시 40분에 시작하여 20시 50분까지 11시간에 걸쳐서 개최되었다. 교원노조 교섭소위 위원 3인과 교육부 교섭소위 위원 3인이 참가하여 본교섭 일정을 협의하였다.

- 2000년 3월 27일 제2차 본교섭위원회가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교원노조는 413건의 단체교섭 수정요구안을 제출하고 ①3차 본교섭 장소는 교원노조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②교섭소위에서 합의된 내용과 미합의된 내용은 본교섭위원회에서 보고하며, ③복직교사 원상회복과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감독 강화는 교섭소위원회를 통하여 논의함을 주요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2000년 4월 7일 제11차 교섭소위원회가 교육부에서 개최되고, 교원노조는 22건의 의제 추가를 요구하고 78개 의제 중 13개를 제외한 65개 의제에 관해서는 차기 교섭소위원회부터 축조심의 진행할 것과 교섭소위원회 장소

향을 논의한다.

4) 3월 이후 본교섭위원회는 4월 중·하순과 5월 초순에 각 1회씩 개최한다.

2000.3.23 교육부 교섭소위 교원노조 교섭소위 위원

를 교원노조 회의실로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모두 거부하였고, 합의서 없이 종료되었다.

- 2000년 4월 14일 제12차 교섭소위원회가 교원징계재심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교육부는 교원노조에게 제11차 교섭소위원회 상황을 지적하며 단체교섭 기간 중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교육부에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단체교섭 원칙 및 방법에 대한 합의서’¹⁷⁾를 제안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교원노

17) 교육부가 제12차 교섭소위원회에 제출한 ‘단체교섭 원칙 및 방법에 대한 합의서안’

제1조(교섭원칙) 교육부장관과 교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사도를 지켜 교섭을 행한다.

제2조(교섭일시 및 장소) ①교섭일시는 직전 교섭위원회 시작 즉시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해진 교섭예정일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합의하여 교섭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②교섭장소는 교육부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호합의에 의하여 교섭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교섭시간) ①교섭은 공무원의 통상근무시간 내에 행한다. ② 본교섭위원회 교섭시간은 2시간, 교섭소위원회 및 교섭관련협회의 실무협회의 교섭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③양 당사자가 교섭상 특별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합의할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해진 시간 외에 교섭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정한 교섭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교섭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양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4조(교섭방법) ①교섭시 양 당사자는 교섭의제를 중심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발언하여야 한다. ② 교섭 시 의사발언은 양 당사자가 1번씩 교차로 발언하되, 1회 발언시간은 3분을 넘어설 수 없다. 다만,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추가 발언할 수 있다. ③제2항을 위반할 경우 상대 당사자가 의사발언권을 가진다.

제5조(금지조항) ①양 당사자는 교섭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교섭시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이나, 강박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폭언, 폭행, 문서의 일방적인 파괴 등의 언행과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상대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6조(단체교섭기간 중 집단행동 금지) 평화롭고 원만한 단체교섭의 진행 등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노동조합은 단체교섭기간 중에 쟁의행위와 쟁의행위에 준하는 집단행

조측은 합의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의제선정에 대하여 합의된 65건에 대해 축조심의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견의 차가 커서 7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격론 끝에 교육부가 산회를 선언 퇴장하고, 교원노조는 교섭재개를 요구하며 4월 15일 17시까지 교원징계심위 대회의실의 교섭장소를 지켰고, 이후 교육부의 교섭소위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4월 18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과 4월20일~4월 22일 사이에 교섭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약속하고 교원노조측은 농성을 해산하였다.

- 2000년 4월 22일 제13차 교섭소위원회가 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나, 교육부가 의제확정 없는 축조심의 거부로 일관하며 교육부측이 가지고 온 심의안은 제출하지 않았다. 3차 본교섭위원회를 29일(토) 오전 10시에 교원노조 사무실에서 개최하기로 의견 접근했으나 교육부측이 종료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교원노조 단체교섭 요구안 107조 교육정책수립위 설치부분은 '교육부내 각종 위원회(협의회)에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나머지 미합의 사항 5개 안건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답변

위 등과 같은 탈법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000. 4. 14 교육부 교섭위원 대표 교원노조 교섭위원 대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부하였다. 미합의 사항 6개 안건(법정정원 확보, 교과전담제 증원, 연구실적평가제개선, 사립교원신분보장, 해직교사 원상회복문제, 107조 교육정책수립위원회 교원노조참여)에 대해서 의제로 삼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교육부측은 소위에서 교섭의제를 확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해직교사 원상회복사항은 의제로 채택할 수는 없으나, 의제와 별도로 논의는 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제3차 교섭소위원회도 합의서 없이 종료되었다.

- 2000년 4월 25일 재14차 교섭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섭의제를 최종 75건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정책에 관한 교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기 구성되었거나 구성되는 각종 법정·비법정 위원회 및 협의회에 교원노조 등 교직단체 참여를 보장하기로 합의하고 동 내용을 공문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 2000년 4월 27일 제15차 교섭소위원회를 교육부 16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교원노조의 교육정책 참여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도 마련과 12개 미합의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일정 제시와 이 내용을 부칙에 명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측에서는 거부하였다.

제3차 교섭위원회를 2000년 4월 29일 개최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교육부측에서 파기함에 따라 2000년 5월 3일 양 노조위원장과 교육부장관이 3자 회동하고, 제83조 사립교원의 신분보장 등 7개 사항을 교섭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5월 6일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회신하였다. 교육부의 회신내용을 공문 그대로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원노조 건의사항 검토 의견

<건의사항 1>

교육부가 단체교섭 시 교섭의제 축소심의를 지연시켜왔고, 교육부측의 교섭의제 검토수준도 교원노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교육부측 교섭위원 전원을 경질하고, 대표를 격상하여 재구성해 줄 것을 요구

<검토의견>

□ '99.7.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교원노조가 법제화되어 '99.7.16 귀 교원노조

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우리 부는 현재까지 교육관계법령과 교원노조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음.

□ 교원노조법제화 이후 처음 시행되는 단체교섭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간에 이견조정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제2차 본교섭위원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상호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간다면 보다 많은 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봄

□ 우리 부는 현재의 교섭소위 위원 및 대표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으므로 상호 신뢰 하에 단체협약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2>

교육부가 4월 중·하순에 개최하기로 약속한 제3차 본교섭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제3차 본교섭위원회 즉각 개최를 요구

<검토의견>

□ 4월 중·하순경에 개최하기로 약속한 제3차 본교섭위원회 개최문제는 2000.4.26 실무협의회와 2000.4.27 제15차 교섭소위 및 교육부 복지81811-338(2000.4.28), 교육부 복지 818811-341(2000.4.29) 공문 등으로 우리 부의 견해를 밝히고 이해를 구한 바와 같이 본교섭위원회 개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교섭의제에 대한 축조심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본교섭위원회에 보고할 교섭의제와 교섭일정 등이 합의되지 않아 5월초로 연기를 요청한 것이므로 오해 없기 바람.

□ 교육부는 제3차 본교섭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교육부 복지81811-357(2000.5.2)로 제16차 교섭소위와 실무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고, 2000.5.3 양 교원노조위원장의 장관 면담 시 언급한 바에 따라 복지81811-367(2000.5.4)제3차 본교섭위원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는데도 귀 교원노조의 사정으로 무산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 2001년도 정부예산 편성 요구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2000.5.20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3차 본교섭위원회의 조기 개최는 물론 교섭소위원회와 실무

협의 등에서 기 합의된 단체교섭의제 75건에 대한 축조 심의와 제3차 본교섭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조기에 타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귀 교원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함.

<건의사항 3>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 제83조(사립교원의 신분보장)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폐교, 학급학과의 축소 또는 폐지로 발생하는 과원교사는 전원 특채하여 공립학교로 임용한다.」를 반드시 교섭의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

<검토의견>

□ 귀 교원노조 단체교섭 요구안 제83조는 우리 부와 교원노조가 2000.4.25 제14차 교섭소위에서 단체교섭 의제로 채택키로 합의한 75건의 교섭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 과원교사의 공립학교로의 특별채용 문제는 시·도 교육감과 사학 경영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교섭의제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부의 입장임.

□ 그러나, 현재도 시·도 교육감이 사립학교 과원교사에 대하여는 당해 시·도의 교원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제5호에 의거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있으므로 귀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원만히 타결하기 위해 동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 과원교사의 공립학교로의 특별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채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교섭소위나 실무협의 등 단체교섭과정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봄.

<건의사항 4>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고, 책임 단위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요구

<검토의견>

□ 해직교사의 원상회복 문제는 2000.4.25 제14차 교섭소위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제에서는 제외하되,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귀 교원노조와 논의하여 나가겠음.

□ 동 문제는 우리 부 교원정책심의관이 「민주화운동 관련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해직교사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되고 보상내용이 결정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건의사항 5>

모든 교육정책과 관련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원노조가 참여하는 교육정책협의회를 교육부 내에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

<검토의견>

□ 교육정책 등 국민의 교육기본권에 관련된 사항과 행정기관이 헌법과 법률 등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할 사항은 단체교섭의제로 채택할 수는 없으나, 교육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귀 교원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우리 부의 입장은 귀 교원노조에서도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음.

□ 우리 부는 제14차 교섭소위에서 귀 교원노조와 이미 합의한 바와 같이 「초·중등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 내에 구성되어 있거나 앞으로 구성되는 법정·비법정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에 교원노조 등 교직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우리 부는 제15차 교섭소위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귀 교원노조가 우리 부내에 설치 또는 설치될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에 참여하기 전이라도 교섭의제에서 제외된 3개 조항(교원 법정 정원확보, 교과전담교사 증원, 연구대회 점수 부여)에 대한 교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일정을 귀 교원노조에게 2000.5.31까지 제시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제14차 교섭소위 합의사항과 제15차 교섭소위에서 밝힌 우리 부 방침과 달리 모든 교육정책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내에 교육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을 것임.

<건의사항 6>

사학 비리 척결과 낙후된 사립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검토의견>

□ 일부 사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사립학교 학교운영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 낙후된 사립학교 시설 개선 등의 문제는 우리 교육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막대하게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등 전국민적 협조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우리부와 함께 귀 교원노조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7>

과외문제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노조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

<검토의견>

□ 우리 부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따른 과외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학계·언론계·법조계·교직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

「과외교섭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2000.5.3 첫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교육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

□ 동 대책 위원회를 구성할 시 교직단체의 참여를 권유하여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노동조합은 참여를 하고 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참여하지 않고 있음.

□ 우리 부는 다양한 단체의 참여 하에 각계 각층의 지혜를 모아 과외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동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오니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동 위원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람.

- 2000년 5월 9일 제16차 교섭소위원회를 교육부 17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교원노조의 7개 사항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서가 건의사항이라고 표현한데에 대해 하부기관이 상부기관에 건의한 것이 아닌 노조의 요구사항임을 밝히고 단체교섭과 관련한 예산심의 구조에 대해 논의를 하고 종료하였다.

- 2000년 5월 15일 제17차 교섭소위원회를 교육부 16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21개항에 대해서 잠정합의하

고 83조 사립교원의 신분보장 의제에 포함 합의하고 합의서 작성 없이 종료하였다.

- 2000년 5월 16일 제3차 본교섭위원회가 전교조 대회 의실에서 개최하고, 교원노조 중 전교조는 복지교사 원상회복문제, 한교조는 교육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한 건, 조합활동의 보장, 임금인상, 사학비리 척결 방안 등의 수용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의 대표인 교육부장관의 직접적인 답변은 회피하였다. 교원노조의 10대 요구사항¹⁸⁾에 대해 20일까지 전향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종료되었다.

- 단체교섭과정 중에 교원노조의 요구가 단체협약안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교조는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 과원교원의 공립학교 전원 특채할 것과 사학비리 척결 요구 및 교육정책 협의회 구성, 초·중등 교사의 수당 차이에 따른 임금차이 철폐, 동일노동 동일 임금에 근거한 양호교사의 보건활동 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며 한국

18)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의제로써 단체협약에 반영할 사항으로 10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① 조합활동의 보장 ② 임금인상 ③표준수업시수 및 초과수업수당지급 ④유치원, 초등교원, 중등교원간 수당 차별 철폐 ⑤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⑥ 사립교원의 신분보장 ⑦ 육아 휴직 ⑧ 자녀학비보조수당 ⑨ 복직교사 원상회복 ⑩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노총 빌딩의 한교조 중앙 본부 사무실에서 한교조 임태룡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결행했으며, 김동주 중앙사무처장의 주도에 민경숙 부위원장과 우희대 업무총괄 본부장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이 21일간의 농성투쟁을 벌였고, 류명수, 오대교, 박생수, 강찬기 본부장을 비롯한 11개 지역본부장과 지역본부임원이 한국노총 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농성을 전개하였다. 한편, 2000년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전교조는 공교육 정상화 촉구 및 핵심요구사항을 요구하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이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철야 농성을 하였고, 5월 24일 이부영 위원장이 단식농성 돌입, 6월 8일 오후 1시 전교조 전국분회장 집단 상경 결의대회 등의 장외투쟁을 전개하였다.

- 2000년 6월 5일 18차 교섭소위원회가 교육부에서 개최되고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요구안에 관한 교육부의 공식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교원노조는 ‘수정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부의 공식 검토의견에는 단체교섭 의제와 별도로 처리할 사항 4가지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추가로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 △교통비 2만원 인상, △무주택 교원 저리 용자 지원,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00년 6월 6일 오전 10시 실무협의를 통해 단체교

섭안에 대한 자구 수정, 20시에 제19차 교섭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건수당 신설, 조합활동 보장을 요구하였다.

- 2000년 6월 7일 15시에 제20차 교섭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양 교원노조는 조합활동의 보장을 요구하였고, 교육부측 대표인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은 한교조가 일관되게 요구한 ‘보건수당 3만원 신설’을 수용함을 확인하였다.

- 2000년 6월 8일 제21차 교섭소위원회가 교육부 회의실에서 개최했으며, 조합활동 보장 이외의 단체협약(안)에는 잠정합의 했으나, 교육부는 일괄하여 잠정합의할 것을 요구하여 결렬되었다.

- 2000년 6월 9일 제22차 교섭소위원회에서 전체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잠정 합의하였다.

- 2000년 6월 10일 제4차 본교섭위원회가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제22차 교섭소위원회에서 잠정 합의된 내용의 변경 없이 단체협약(안)에 양 당사자 대표인 한교조 임태룡 위원장과 전교조 이부영 위원장, 문용린 교육부 장관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단체교섭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 2000년 7월 3일 한교조에서 조인식을 개최할 차례이

었으나, 한교조가 교육부에 양해를 해줌으로써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조인식이 개최되었다. 단체협약서에 양 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1999년 7월 16일 시작된 단체교섭이 해를 넘겨 종결되었다.

교원노조와 사용자인 교육부와 최초로 체결된 유효기간이 1년인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생애비용을 반영하는 생활급 보수체계 도입 등 교원 보수체계로의 개편
- △ 기말수당 일부의 본봉 편입(200%정도 추진 예정)
- △ 유치원,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보수차별 철폐
- △ 보직교사수당 및 담임교사수당을 각각 6만원, 8만원으로 인상
- △ 양호교사의 보건활동수당 월3만원 신설
- △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지급
- △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 △ 산업체 및 양호교사의 교원임용 전 경력 인정
- △ 사립학교 폐교, 폐과, 학급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의 공립학교 특채
- △ 무주택 교원의 주택전세자금 지원
- △ 15년 이상 근무 교원대상 봉급 및 보수성 수당의 50% 지급 받는 자율연수 휴직제 실시

- △ 퇴직교원의 포상기준 대학과 동일하게 적용
- △ 불필요한 장부 폐지
- △ 교과연구실 확보 등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2건과 교원노조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9건 등 총 46개 조문(전문·본문 42개조, 부칙 4개조)으로 합의되었다.

2. 시·도 지역본부 단체협약 체결 현황

1999년 7월 1일 교원노조법이 제정된 후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이 체결되고, 한교조와 전교조의 시·도 지역본부 및 지부와 시·도 교육청의 사용자 대표인 교육감과 단체교섭이 시작되었다. 각 시·도 교육청과 지역본부와의 단체교섭은 한교조와 전교조의 공동교섭단이 교육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이행확보를 위해서 교원노조가 교육부와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시작되었으며, 2000년 12월 10일 현재 전북을 필두로 경남, 충북, 대전, 부산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일부 시·도 지역에서는 계속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단체교섭이 종결

되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각 시·도의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각 시·도의 단체교섭 현황(2000년 12월 12일 현재)

시·도	교육부	대전	충남	충북	경남	전북	부산	경기	강원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북, 전남, 제주
체결일	7월	11월	12월	10월	10월	7월	11월	12월	12월	진행 중

중앙의 단체교섭의 체결이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원 노조법 제6조에 의해 각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진 전국단위의 교원노조 위원장이 시·도 교육감과 직접 교섭을 하여야 하나 한교조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경기도 등 일부는 각 시·도 본부의 본부장에게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하였고 경상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제주도는 중앙본부의 사무처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사용자인 시·도 교육감과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임을 고려할 때

많은 교원들은 빠른 시일내 단체협약 체결을 기대하였으나 단체협약안에 대한 상반된 이해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교섭위원 비율 구성 등의 대립으로 한교조는 전교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데 많은 갈등과 소모전을 치러야 했다.¹⁹⁾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시도 단위의 단체교섭은 중앙에서 교원노조와 교육부와 체결된 단체협약의 수준을 기본으로 하는 한계를 보

19) 교원노조가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인 교육부장관(시도 단위인 경우 교육감)과 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가 있을 때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교섭창구의 단일화 방법으로 같은 교원조직을 조직대상으로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인 한교조와 전교조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양 교원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에 임해야한다. 한교조 시도 지역 본부와 전교조의 시도 지부의 일부지역에서 양 교원노조의 교섭위원 배분에 대한 의견이 아주 커서 진통을 겪었다. 참고로, 전국단위 양 교원노조의 교섭위원 배분은 12명의 교섭위원 중 한교조 교섭위원 4명, 전교조 교섭위원 8명으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1:2로 선임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다.

였으나, 각 시·도의 교원노조와 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시·도 단체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아래와 같다.

1) 중앙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

① (전문) ‘시·도 교육청과 본부는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바람직한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로 하였다. 이는 교육부와의 내용과도 유사하다.

② (적용범위)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 그리고 공립 학교 교원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적용토록 하였으나, 대전광역시는 교원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한다’로 하여 사립학교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③ (조합활동 보장) 단체교섭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락하고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사고는 공무상재해로 인정하였다.

④ 조합비 일괄 공제

⑤ (연수과정에서의 강좌 개설) 신입교사 연수 등 교원

연수과정에 일정시간의 교원노동관계 관련과목 개설·운영에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⑥ (편의제공) ㉠사무실 제공, ㉡기타 노동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장소와 시설의 제공 노력

⑦ (자료 통지 협조) ㉢시·도 교육청은 조례, 규칙, 규정의 제정과 사항 시의 통보 ㉣교원노조는 조합의 규약 변경사항, 임원명단 통보

⑧ (교원의 근무 조건 개선) ㉤법정 장부 이외의 불필요한 장부 비치 말도록, ㉥일·숙직 단계적 폐지, ㉦보고 문서 줄이기, ㉧주번제도 개선 등 이 분야는 각 시·도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 심혈을 기울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사립학교의 폐교·폐과·학급수 감축 등의 사유로 과원이 발생한 경우 공립교사로 특별채용 검토

⑩ 자율연수비, 출장비, 이전비 지급

⑪ 여성교원의 월 1일의 보건 휴가

⑫ 수유시간 및 모성보호

⑬ 여성교원 출산휴가의 적용

⑭ 양호교사의 신분 및 처우 개선

⑮ 유치원, 특수교사의 처우 개선

⑩ 예산확보 등 실업고 처우개선

⑪ 연구·시범학교의 운영 개선

⑫ 연수제도의 개선

교원의 인사문제에 대하여서는 인사위원회에 양 교원 노조의 추천인사가 참여하는 인사관리제·개정위원회 설치(대전), 2001년도 교사의 정기전보기준 마련을 위한 초·중등별 위원회 설치(충남, 충북), 정기전보제도의 개선(전북), 초·중등 교원 인사관리 규정개정(충북) 등 거의 모든 시·도가 교섭타결을 하였다. 사용자의 교섭금지 대상 영역을 주장하는 교육청 측과 근무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섭대상의 범주를 주장하는 교원노조측의 주장이 맞서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타결을 보게 되었고 이는 앞으로의 교섭방향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 부칙에 있어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협약갱신, 보충협약 및 재교섭 보장, 협약서의 보관, 이행책임 등 일반적인 행정적 사항은 모든 시·도가 유사하다.

2) 각 지방 교원노조와 교육청의 상황에 따른 차이 있는 내용

이와 같이 각 시·도의 단체협약 내용에 같은 점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중앙집권적이고 대부분의 교육정책들이 법과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시·도 교육감의 자율성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되나, 나름대로 각 시·도는 상황을 고려한 단체협약내용을 체결하였다.

냉·난방 시설 확보, 냉·온수 정수기 설치, 도서구입 예산 확보 등 학교환경개선(부산), 남녀공학의 경우 탈의실 확보,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충남, 대전, 부산) 등 학생의 인권 및 학생복지 시설 대한 것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충남, 충북), ‘어린이 날 놀이 한마당’등 노조행사의 지원을 약속 받고(부산),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지급(경남), 농어촌 및 벽지지역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사택 제공, 교육문화활동 지원(전북), 법인 정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사학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공개(대전), 국립학교근무교원의 연수자격 대상자 선정시 국·공립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승진인사의 특례폐지, 내신성적에 의한 입학전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의 개선(충북) 등은 각 시·도의 현안들을 교원노조와 교육청과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3) 교원노조와 각 시도 교육청 단체협약의 내용

□ 교원노조와 전라북도 교육청의 단체협약

1. 적용범위 2. 단체교섭의 참석 3. 연수과정에서의 강좌개설 4. 조합전임자 5. 조합비 일괄공제 6. 시설편의제공 7. 문서열람, 자료 및 정보공개 8. 통지할 의무 9. 정기전보제도의 개선 10. 기간제 교사의 임용조건 및 처우 11. 사립학교교원의 교류 및 신분보장 12. 전문직 임용 시 공사립별 차별 철폐 13. 산업체 경력 인정 14. 교원의 수업 시수 15. 연구수당의 인상 16. 공무상 재해인정 17. 이 전비 지급 18. 출장비 지급 19. 영역별 교사의 확보 20. 과학실험보조원 확대 21. 잡무경감 22. 유치원 교원의 잡무 금지 23. 교원의 연구환경 24. 교단선진화 기기 확보 25. 주택마련, 사택제공 26. 교원체육 활성화 27. 후생조건의 확충 28. 교원연수 지원 및 형평성 보장 29. 교원문화 활동 지원 30. 학급규모(유치원, 실업계) 31. 학교시설의 개선 32. 유치원 신설 33. 청소년 종합문화센터 34. 보건휴가 35. 수유시간 보장 및 모성보호 36. 여성교원 출산휴가 적용

【부칙】

1. 유효기간 2. 협약갱신 3. 보충협약 및 재교섭 4. 이행

책임 및 협약의 보관

□ 교원노조와 충청북도 교육청의 단체협약

1. 적용범위
2. 조합활동의 보장
3. 교원연수시 강좌개설
4. 시설편의제공
5. 타단체와의 관계
6. 통지의 의무
7. 교원근무조건보장을 위한 조치
8. 교내근무조건향상을 위한 조치
9. 승진인사의 특례폐지
10. 기간제교원의 임용조건 및 처우
11.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조치
12. 교원의 자질향상 활동에 대한 지원
13. 체험학습의 운영
14. 연구학교의 운영개선
15. 여비지급
16. 이전비지급
17. 부부교사의 시·도간 인사교류
18. 교원의 잡무금지
19. 교원의 연구환경조성
20. 교육분쟁위원회 설치 운영
21. 여성교원의 모성보호
22. 학부모의 부담 경감
23. 입시제도의 개선
24. 학교주변환경 개선
25.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26. 유치원 시설
27. 양호교사의 신분 및 처우개선
28. 특수교육의 지원

【보칙】

29. 소요예산반영

【부칙】

1. 유효기간
2. 협약갱신
3. 보충협약 및 재교섭 등
4. 이행책임 및 협약의 보관

□ 교원노조와 충청남도 교육청의 단체협약

1. 적용범위 2. 조합활동의 보장 3. 연수과정에서의 강좌개설 4. 조합비 일괄공제 5. 시설편의제공 및 정보공개 6. 협약갱신 7. 보충협약 및 재교섭 8. 협약의 보관 9. 교원전보제도개선을 통한 근무조건 향상 10. 기간제교사의 임용조건 11. 사립학교교원임용의 공정성과 신분보장 12.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3. 교육활동 강화(출장비,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이전비) 14. 여교사의 권리와 모자보호 15. 교원의 잡무경감 16. 당직근무 및 주변교사부담경감 17. 연구시범학교로 인한 근무부담 경감 18. 학교버스제도개선 19. 학교 앞 도로교통안전 20. 초등교원의 근무조건개선 21. 학생의 인권보장 및 학생복지 22. 청소년종합문화센터 23. 유치원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24. 유아교육의 공공성 증대 25. 농어촌 교육환경개선 26. 특기적성, 상설특활부 27. 교원연수에 대한 지원(자율연수비 30%, 사립, 특수, 유치원, 양호 등) 28. 학급의 규모(유치원, 초·중·고) 29. 학교시설 30. 학부모의 부담 경감 31. 실업계교사들의 근무조건 개선 32. 특수교육요구아동 교육권의 질적 보장 33. 보건실 운영

【부칙】 1. 협약체결은 1년

□ 교원노조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단체협약

1. 적용범위
2. 조합활동의 보장
3. 조합원 교육(신임교사 연수 등)
4. 조합활동 중 사고의 공부상 재해인정
5. 조합비 일괄공제
6. 시설편의제공
7. 자료제공 협조
8. 교원근무여건의 개선
9. 사립학교교원권의 신장
10. 임신중인 여교원 보호
11. 여교원의 육아시간
12. 교원의 잡무경감
13. 공문서 처리업무 간소화
14. 교원당직근무경감
15. 연수기회확대(사립, 양호, 특수, 대학원)
16. 교원연수에 대한 지원
17. 교통사고방지고 교사와 학생의 안전성 확보
18. 유아교육시설
19. 유아교육담당교원의 근무여건개선
20. 특수교육의 지원
21. 특수교원담당교원의 근무조건개선
22. 보건의교육의 여건개선
23. 후생시설의 확충
24. 휴양시설
25. 피복비
26. 이전비 지급

【부칙】

1. 유효기간
2. 협약갱신
3. 보충협약 및 재교섭
4. 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5. 이전비 지급 및 교원의 당직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6. 교원의 잡무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7. 협약서 보관

□ 교원노조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단체협약

1. 적용범위
2. 조합활동의 보장
3. 연수과정에서의 강

좌개설 4. 전임자의 처우 5. 시설편의제공 6. 조합의 교육
 행사지원 7. 조합의 문서이첩 8. 홈페이지에 교원명부탑
 재 9. 자료제공 협조 10. 교원여비지급 11. 교원연수여비
 지급 12.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13. 교원이전비 지급 14.
 교원연구비 지급 15. 교원자율연수 경비 지급 16. 법령
 준수 17. 조례·규칙의 제·개정 18. 법인정관 공개 19.
 인사관리 원칙(교원인사관리체에 조합추천인사 참여)
 20. 교내인사위원회 구성 21. 교사 및 보조원 확보 22.
 상담, 사서, 과학, 전산보조 23.연구활동보장 24.연구시
 범학교운영개선 25. 교과 외교육활동 26. 부전공연수 27.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개선 28. 유치원 29. 초등교육(교과전
 담, 법정정원) 30. 특수교육 31. 실업고 실습환경개선 32.
 양호교사(정원확보, 출장여비지급, 차별철폐) 33.사립학교
 교사 당직 부담경감 34.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35. 사
 학법인 경영평가 36. 교원의 업무경감 37. 수업료 조정
 사유공개 38. 예산의 배분 39. 체험학습용 차량지원 40.
 학교의 통·폐합·이전 41. 학생자치활동 지원 42. 소인
 수 학급담임제 43. 연수기관이용 44. 교원 및 학생복지시
 설(교원휴게실, 학생대의원회의실) 45. 교사동호회 활성화
 46. 보건휴가 47. 출산휴가 48. 육아시간 49. 교섭요구
 50. 교섭원칙 51. 대표위원 52. 합의서 작성

【부칙】

1. 유효기간 2. 협약갱신 3. 보충협약 및 재교섭 4. 준용
5. 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6. 협약서 보관

□ 교원노조와 부산광역시 단체협약

1. 적용범위 2. 협의회 운영 3. 교원노동관련 강좌개설
4. 단체교섭 참석자의 복무 5. 조합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 6. 시설사용 협조 7. 조합비 일괄 공제 8. 교원의 업무경감 9. 과학실험·전산보조원 배치 17. 전결 제도 확대 18. 시간외수당지급 19. 이전비 지급 20. 노조 행사 지원 21. 여비지급 22. 학생지도비 인상 23. 교원의 인사(교사의 정기전보기준 마련을 위해 초·중등별 협의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운영) 26. 초등영어 교과전담제 27. 상처교과 수업감축 28. 공부상재해인정 29.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30.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임용 31. 사학 교원과 국·공립 교원의 동등한 혜택부여(전문직, 연수, 포상) 32. 여성교원의 보건휴가 33. 임신 중인 여성교원의 보호 34. 여성교원의 출산휴가 35. 여성교원의 육아시간 36. 교육훈련비 지급 38. 교원의 연수(초등과학, 양성평등 및 성희롱연수) 40. 수업일수 41. 냉·난방 시설 42.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43. 도서구입예산 확보 44. 교칙의

제·개정 45. 학생복지시설 46. 연구·시범학교 신청 47.
유치원 운영 52. 실험·실습비 예산 증액

【부칙】

1. 유효기간 2. 협약갱신 3. 보충협약 및 재교섭 4. 협약
서의 보관 5. 준용

3. 교원노조 단체협약체결의 의의와 그 과정에 서 나타난 문제점

교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고 최초로 실시된 교원노조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의 체결은 노사
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교육현안에 대해
고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소위 5.30
교육개혁 조치 이후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린 교사들을
개혁의 주체로 세워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산별노조
인 교원노조가 정부를 대신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
해 올바른 교원노사관계의 모범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
울여왔다는 사실과 교육부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완강

히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던 교원노조와의 교육정책협의회를 받아들이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교원노조의 요구가 정책수립에 반영되는 길을 연 것 등²⁰⁾은 현장교원의 사기진작에 일정하게 기여하게 할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양 교원노조의 자체적인 평가이다.²¹⁾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인권보장 및 학생복지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에 대한 단체협약의 내용 등은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이 교원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교육발전을 위한 단체협약체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단체협약서에서 드러난 특이한 것은 교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룹이었던 양호교사의 현안이 보

20) 교원노조는 교육환경 개선,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교육행정체제의 개혁 등 제반 교육정책의 개선안과 교원의 근무조건과 밀접한 교원 승진 및 인사의 개선에 대해서도 교섭의 제로 선정·합의 해 주길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교육정책의 수립권한과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교섭의 양 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교섭의 진행이 어려웠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제14차 교섭소위원회 회의록을 참조 할 것

21) 교원노조, 2000년 6월 9일 보도자료 참조

건교육연구회의 민경숙 회장 및 지도부가 한교조와 조직 연대를 선언하고 대다수 가입을 함에 따라 교원노조와 교육부의 중앙단위교섭, 시·도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교육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15조(보건활동수당지급)-교육부는 양호교사에 대하여 월 3만원의 보건활동을 신설한다.-교원노조와 충청북도 교육청과의 단체협약서 제27조 양호교사의 신분 및 처우개선, 교원노조와 경상남도 교육청과의 단체협약서 제22조 보건교육의 여건개선, 교원노조와 대전광역시 교육청과의 단체협약서 제32조 양호교사(정원확보, 출장여비지급차별철폐) 등의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는데 한교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되고 양호교사가 교육현장의 새로운 교육노동세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 단체교섭에서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들이 사용자 단체 구성을 거부하고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해태함으로써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 노동기본권 보장이 현행 교원노조의 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와 달리 형해화 되었고, 교원노조와 교육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31조(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에게 사립학교의 폐교·폐과·학급수 감축 등의 사유로 과원이

발생할 경우 당해 시·도의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 이상의 내용을 합의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단체교섭 의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의제를 패키지화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축조심의를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교원노조는 이미 합의된 의제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추가의제를 확정하자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한 달간이나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것은 교육부가 교원노조의 교섭요구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며 양 단체교섭 당사자간의 신뢰부족과 비 타협성은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지역본부·지부와 시·도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에서는 산적한 교육현안들과 최초의 단체교섭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처음 단체교섭(안)의 요구시 많은 항목의 단체교섭 의제를 요구하였으나, 실제 협약체결은 요구안 중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교원노조에서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어느 의제를 교육청 측에서 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교섭이 진행되기도 하였다.²²⁾ 이는 대등한 노사간의 단체교섭보다는 사용자인 교육감이 교원노조에게 마치 베푸는 듯

22) 시·도 본부(지부)와 교육청과의 교섭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한 인상을 주게되고,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한을 경시하는 것 같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교육감 권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현장 교원들이 원하는 핵심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 요구안이 되도록 교원노조는 힘써야 하고, 현재 현장교원들 중에는 교원노조 조합원보다 비 조합원이 많다는 사실과 단체협약의 체결내용이 모든 교원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교원노조 단체교섭 요구안의 채택은 이들의 정서도 고려하는 신중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체교섭의 사전준비로서 교육현안에 대하여 교육부·교육청과 교원노조가 함께 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 등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그러한 방편이 될 것이다.²³⁾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들은 교직사회의 핵심요구사항이고 우수한 인재를 교직사회에 입직시키기 위한 기본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침체된 교원들의 사기를 다소나마 진정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분회단위 조합활동보장이 교섭체결 종료까지 쟁점사항 이었다.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학생의 학습권의 조화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지를 교섭의 당사자들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

23) 푸른교육신문, 2000. 12. 18. 7면 참조.

IV. 교원노조법의 개정방안

이와 같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노사 관계를 발전시키는데는 「교원노동조합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원노조법이 보다 확실히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교원노조 가입자격 제한규정을 개정하고 가입자격을 확대

교원노조의 가입자격을 「교원노동조합의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 1항에서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대학의 교원은 물론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교원노조 가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립대학 교수의 경우 신분보장이 초·중등교사 보다 더 열악한 경우도 많으며, 계약제와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고, 대학의 교수들이 직접 교수노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별도의 교수들을 위한 새로운 교수노조법의 제정보다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교수들도 가입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의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발전한다고 볼 때, 학교의 직원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공무원의 노사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u>교원</u>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u>교원</u>에 적용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u>교직원</u>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u>교직원</u>에 적용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u>교원</u>”이라 함은 <u>초·중등교육법 제19조</u>에서 규정하고 있는 <u>교원</u>을 말한다.(이하 생략).</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u>교직원</u>”이라 함은 <u>초·중등교육법 제19조</u>에서 규정하고 있는 <u>교직원</u>을 말한다.(이하 생략)</p>	
<p>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u>교원</u>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p>	<p>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u>교직원</u>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단,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p>	

※ 참조 : 양 교원노조인 한교조와 전교조가 의견이 일치되는 법률 개정안 임.

<윤병선, 한국 교육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참조>

2. 교원노조 전임자에 관한 규제 제거

교원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전임자로 되는 절차도 임용권자의 허가사항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정해야하며, 교원노조 전임자에게도 일반노조와 같이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종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③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④...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직원 은 <u>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u> 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③ 삭제 ④...	

※ 참조 : 양 교원노조인 한교조와 전교조가 의견이 일치되는 법률 개정안 임.

3.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의 삭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노조법 제3조와 제14조 3항을 삭제해야한다. 일반노조의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있고, 대학교원에게도 허용되는 현 상황에서 교원노조에게만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형평에 어긋날뿐더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교원노조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치적 기본권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②... ③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의 규정은 교원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②... ③ 삭제	

※ 참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이나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단체교섭에 대한 구조의 변경

교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국·공립 학교 교원의 경우, 전국단위는 교육부장관과 시·도 단위는 교육감과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연합하여 구성한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이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사용자 단체의 구성을 강제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사학재단연합체의 구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원노조가 교섭에 임해줄 것을 각 사학 재

단에 요구했지만, 단체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부문교섭의 틀에 걸맞는 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부와 사학재단 연합체의 대표가 공동으로 구성한 사용자 단체의 와 국·공립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노조의 교섭위원을 선발하여 교섭하는 방식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²⁴⁾

24)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의 교원은 임용과 임면권자가 다르며, 임용방법도 다르다. 교육공무원은 공개전형을 통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사학이 개별적으로 특별전형 한다.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원천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단위학교노조를 인정하여 단체교섭의 구조를 전국단위의 교원노조와 단위학교의 노조가 함께 구성한 교섭위원과 개별사학재단의 교섭위원과 교섭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립학교 역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근로조건을 위해 교육부와 사학재단 연합체가 함께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행	개정안
<p>제6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로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p> <p>③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제6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임금·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전무직인 대표자들로 구성된 공동교섭단 또는 시·도 교육감 과 시·도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공동교섭단 또는 교육감 과 시·도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공동교섭단과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p>

5.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규제 제거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제7조 1항은 국회의 입법권·예산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지만 결국 규범적 부분의 규범력을 상실하게 하는 점에서 단결자유의 외형만을 남기고 협약자치의 본질을 형해화하여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은 신사협정의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된다.²⁵⁾

조례는 시·도 의회에서 제정된 내용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교원에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법령 혹은 법령에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교원노조법 제7조 ①항 개정한다. 예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행이 확보되는 것으로서 그 한계는 인정하되 교육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체결한 단체

25) 김상호,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1999 27면 이하 참조

협약 중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예산안에, 교육감이 체결한 단체협약 중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노조법 제7조에 ③항 신설하도록 한다.

현행	개정
<p>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p> <p>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u>법령·조례 및 예산</u>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u>법령 또는 조례</u>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p> <p>②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p>	<p>제7조 (단체협약의 효력)</p> <p>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p> <p>②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p> <p>③(신설) 제1항 및 제2항의 문장에 관하여도, 교육부장관 이 문장이 과거 조약만 및 체결하여 다음 중 정부와 체결한 다음은 이를 법에 체결하는 정부와 관련 법에 관한 법, 교육부의 문장 자가 과거 체결한 단체협약의 다음 중 법에 사도 법률로 다음은 이를 법에 사도 교육부의 체결하는 사도 체결한 법에 관한 법.</p>

※ 참조 : 양 교원노조인 한교조와 전교조가 의견이 일치되는 법률 개정안임

6. 교원노조법 제8조 쟁의행위 금지 조항의 삭제

「교원노조법 제8조」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외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하는바 헌법의 정신에 충실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쟁의행위의 제한적 허용)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참조 : 양 교원노조인 한교조와 전교조가 의견이 일치되는 법률 개정안 임.

V. 결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교원노조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체결과정과 단체협약을 고찰하여 보았으며, 교원의 노동기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교원노조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교육부는 교원노조와 교원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와 교원노조법과 내용이 유사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²⁶⁾ 이하 및 동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약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교섭·협약의²⁷⁾를 하고 단체협약과 유사한 교섭·협약의 합의를 교

26) 제1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약한다. 제2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약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합의된 사항의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27) 시행령 제3조에서 「교섭·협약사항의 범위」를 1.봉급 및 수당체계에 관한 사항 2.근무시간 ·휴게·휴무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 3.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4.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교권신장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에

환하고 있다. 이 교섭·협의 합의서가 법적으로는 단체협약과는 다르다 해도 교원노조가 합법화되고 교원노조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교원노조법과 노동기본권에 있어서 기본권의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력을 약화시키며, 교원노조의 조직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교섭·협의 규정을 폐기하여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교원노조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명백히 근로자의 신분인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노동3권이 모두 인정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산별노조인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정부의 사용자 대표로 교육부장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예산과 공무원의 각종 근무제도를 직접 관장하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것과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들의 대표를 공동교섭단에 함께 포함시켜 사립학교 교원이 임금·근로조건·후생복지

관한 사항 7. 영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문성 신장과 연수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공 부문의 산별단체교섭이 되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최소한의 사립학교 교원의 단체교섭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받기를 제안하며, 정부 예산 편성 시 교육공공 부문에 관하여 교원노조의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와 통로를 마련 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충호, 공공부문의 단체교섭 실태조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0.
- 교육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구도, 1999.
- 김상호,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9.
- _____, 노조전임자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8.
- 김선수, “교원의 노동기본권”, 노동법연구, 1991, 311면 이하.
- 김소영,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변모하는 노사관계와 노동법의 과제, 1999, 1면 이하.
- 김영문, “교원노조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간행논문, 2000.
- 김현준, “교원노조 산별교섭의 특징과 문제점”, 산별중앙교섭공동대책위원회주최, 산별중앙교섭정책토론회 2000년 5월 10일 토론자료.
- 김형배, 노동법, 제11판, 1999.

노동부, 교원노조 업무 편람, 1999.

신윤근, 단체협약의 체결, 도서출판 우현, 1990.

신인령, 노동인권과 노동법, 녹두, 1996.

신현직,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노동기본권” 민주법학 제4호, 1990, 101면 이하.

이상윤,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노동법학 제10호, 2000, 107면 이하.

이일권, “교원노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산별중앙교섭공동대책위원회주최, 산별중앙교섭 정책토론회 2000년 5월 10일 토론자료.

이철수,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구도”, 노동법학 제10호, 2000, 85면 이하.

이철수·강성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한국노동연구원, 1997.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1999.

윤광희, 일본과 미국의 교직단체에 관한 연구, 교육부정책연구과제, 2000.

윤병선, 한국 교육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문제점과 개선점, 2000년 12월 전교조 내부 토론회 자료, <http://www.ktu.or.kr>

전옥봉,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해

설” , 노동법률, 1999년 10월호, 50면 이하.
하승수·김진, 교사의 권리 학생의 인권, 사계절,
1999.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0.
허종렬, “교원법제화의 의의·내용과 향후 발전과
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
한국경영자총협회, 일본의 노조전임제에 대한 연
구, 1999.

○ 기타 참고자료

교육부, 교육부-교직단체 교섭(·협약) 및 합의 관
련 자료집, 2000.
교육부 인터넷 사이트, <http://www.moe.go.kr>
교원노조, 보도자료.
한국교원노동조합, 단체교섭체결 보고서, 2000.
푸른교육신문, 2000년 12월 18일 7면 기사.

【부록】

- 2000년 교원노조 단체교섭(안) -

전 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의 공동교섭단”(이하 “조합”이라 부름)과 교육부장관(이하 “교육부”라 부름)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민주적 교육개혁의 실현을 위하여 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이 협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적용 범위】 이 협약은 조합과 교육부, 그리고 모든 교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 【유일교섭단체】 교육부는 조합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하며, 조합 이외의 여타 단체와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제3조 【법령의 제·개정】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개정안을 조합과 합의하여 마련하고 이를 2000년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한다.

제 2 장 조합활동

제4조 【조합활동의 보장】

1. 교육부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동을 방해 또는 개입하지 아니 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2. 조합활동은 수업과 학사일정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부(학교장)에 사전통지 후 조합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조합활동은 통상근무로 간주한다.

- ① 단체교섭 참석
- ② 조합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행사 또는 교육 참석
- ③ 상급단체 또는 외부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석
- ④ 조합의 회계감사
- ⑤ 기타 조합과 교육부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

3. 교육부는 학교 안에서 단위학교 분회의 간판, 전용 게시판, 현수막의 설치를 보장하고 분회 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4. 조합이 지정한 간부에게는 주당 10시간의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5. 조합원이 조합활동 과정에서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제5조 【조합원 교육】

1. 교육부는 월 2 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조합은 이를 모았다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조합은 수업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원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부는 신임 교사 연수 및 교원자격 연수 시 조합이 지정하는 자에게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4 시간 제공한다.

제6조 【조합 전임자】

1. 교육부는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 대표가 추천하는 자(300명당 1인)를 조합활동에 전임으로 인정한다.

2.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하여 전임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

3. 교육부는 조합 전임자가 조합활동 과정에서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제7조 【시설편의 제공】

1. 교육부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 전용 사무실로 제공하여 조합이 관리케 하며,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전화, 팩스, 컴퓨터, 차량 등을 제공하고, 교육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방송망과 통신망의 이용을 허용하며 조합사무실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2. 교육부는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연수,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다.

3. 교육부는 교육부가 관할하는 각종 시설을 조합이 요청할 경우 무상 제공한다.

4. 교육부는 교육부와 교육청내에 조합이 요구하는 즉시 ‘노조연락사무실’을 개설한다.

제8조 【교육훈련비 지급】 교육부는 교육훈련비로 조합원의 수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연 1만원을 2001년부터 매년 2월 중 조합에 지급한다.

제9조 【조합에 대한 후생 복지 지원】 교육부는 조합에 대한 후생복지자금으로 2004년까지 200억원을 지원하고, 그 첫해인 2001년도에는 50억원 지원한다.

제10조 【조합원에 대한 긴급재난 보호기금 지원】 교육부는 2004년까지 조합원에 대한 긴급재난보호기금으로 10억원을 지원하고 그 첫해인 2001년도

에는 2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제11조 【문서열람, 자료 및 정보 공개】 교육부는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 및 노동조건, 예산안 등 조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문서 및 자료,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과 복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 3 장 단체교섭

제12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간사선임】 조합, 교육부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14조 【자료제출】 어느 일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상대방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시상근】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교육부는 교섭기간중에 조합의 교섭위원 전원의 임시 상근을 인정한다.

제17조 【조정·중재 원칙】 조합과 교육부는 분쟁에 관해 상호 성의를 다해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조정·중재 기간중에도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을 경우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제 4 장 임금 및 복지

제 1 절 기본급(봉급) 및 수당

제18조 【임금 삭감액 복원】 교육부는 IMF시기에 삭감된 기말수당 120%, 체력단련비 125%를 2000년 하반기에 분할 지급한다.

제19조 【호봉승급시기】 교원의 호봉 승급 시기는 매월로 한다.

제20조 【임금 인상】 교육부는 2001년 1월부터 2000년 임금 총액 대비 15.2%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제21조 【교직수당의 기본급(본봉)화】 교육부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교직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하여 지급한다.

제22조 【호봉체계 조정】

1. 현행 36호봉이 최고액(근가10호봉 포함)에 도달하도록 기본급(봉급) 체계를 조정한다. 이를 위해 18호봉부터 36호봉까지 호봉승급액을 일괄 조정한다.

2. 정년단축으로 인해 손실되는 임금부분(3년)에 대해서는 호봉조정을 통해 보전한다.

제23조 【각종 수당의 현실화】 교육부는 교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1. 가족수당은 1인당 5만원으로 한다. 부양가족의 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부양의무가 있는 교원에게는 동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

2. 보직교사 수당과 담임수당은 매월 15만원을 지급한다.

3. 주당 기준 수업시수(고등학교 16시간, 중학교 18시간, 초등학교 19시간) 보다 많은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게는 초과수업수당을 시간당 1만5천원 지급한다.

4. 모든 교원에게 연구수당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신설)

5.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보수월액의 1/26의 150%로 한다.

6. 당직근무수당은 보수월액의 1/26의 150%로 한다.

7. 양호교사에게 보건수당으로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

제24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교육부는 교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만3세 이상 유치원 자녀·대학생 자녀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와 성회비 해당액을 전액보조한다.

제25조 【복리후생비】

1. 교통비는 매월 15만원을 지급한다.

2. 급량비는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26조 【유치원, 초등, 중등교원의 수당 차별 철폐】 중등교원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되는 수당(기본연구비·직책연구비·학생지도비)을 유치원·초등 교원들에게도 지급하여 수당의 차이를 없앤다.

제27조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임금 지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보수 기준을 공립교사의 임금이 준하여 책정하고,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한다.

제 2 절 복지 후생

제28조 【무주택 교원의 주택 자금 지원】

1. 무주택 교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금 융자 상한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상환자금을 금리 6 %로 융자해준다.

2. 무주택 교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전세자금 융자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상환자금을 금리 6 %로 융자해준다.

3. 무주택 교원이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연말 정산시 세금공제를 하도록 한다.

4. 주택조합을 통한 교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교원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대해나간다.

5. 교원주택(임대) 분양시 한부모 교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29조 【피복비 지급】 교육부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체육복, 실습복, 운동화 등)를 연 1회 지급한다.

제 3 절 연 금

제30조 【연금관리공단 통폐합 운영】 교육부는 합리적인 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사학연금관리공단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통폐합한다.

제31조 【연금관리공단의 예·결산 국회 승인 및 공개】 교육부는 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연금관리공단의 예·결산을 국회의 승인을 받으며, 조합에게 그 결과를 공개한다.

제32조 【연금관리공단 이사회의 연금주체 참여】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대표를 포함한 연금 기여(부담) 주체가 연금관리공단 이사회의 이사로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연금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

1. 교육부는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연금 기금 운용 심의회에 교원 노조를 포함한 연금 기여 주체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2. 사학 연금 관리 공단에도 연금 기금 운용 심의회를 설치하여 교원 노조를 포함한 교원 대표와 사학법인 및 경영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금운영의 내역은 가입자에게 공개하고 연1회 이상 공개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2, 3항 삭제】

1. 연금기금을 정부가 공공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한 공공자금관리기본법 5조 2항, 3항을 삭제한다.

2. 정부가 빌어 쓴 연금 기금을 상환하고 공공기금예탁으로 인한 기금 손실액을 보전한다.

제35조 【군복무 기간 삽입에 따른 정부 부담금 미납 완전 해결】 교육부는 교원들의 군의무 복무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으로 소급하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2001년 12월까지 완전 해결하여야 한다.

제36조 【부담금 확대 지원】 교육부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사학 교원에 대한 국가나 사학법인의 부담금을 일반 기업의 퇴직금 부담 범위만큼 부담 총액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37조 【기여금】 연금 개인 기여율(부담률)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조합을 포함한 연금가입자 대표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연금지급방식】 연금 급여의 지급 방식과 지급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제39조 【유족연금 지급률 조정】

1. 교육부는 20년 이상 재직중인 교원이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에 한해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다.

2. 교육부는 20년이상 재직중인 여교원이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제40조 【퇴직수당 지급률 조정】 교육부는 퇴직수당 지급률을 20년 이상 재직한 교원에게 매년 2%씩 가산한다.

제41조 【연금지급 불이익 금지】 교육부는 교원이 징계를 받거나 과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연금수급권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2조 【사립학교 근무 경력 공립교원 명예 퇴직금 허용】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교원 중 총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면 명예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관련법률 개정안을 1999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제43조 【33년 연한제 폐지】 현행 연금 33년 연한제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폐지한다.

제 4 절 안전 · 건강

제44조 【교육중 사고】

1.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서 고의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교육부가 배상 및 보상을 책임지고 배상과 관련하여 해당 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교육부는 학생들이 등하교시를 포함한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서 고의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교육부가 배상 및 보상을 책임진다.

3. 위의 1,2 사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부와 재단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제45조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의 개선】

1. 안전공제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안전공제회는 교육부와 조합이 동수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학교장 회원제를 전 학생 회원제로 개선한다.

3.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 청구권은 교사와 학부모에게 있으며 안전공제회는 안전사고로 인한 질병, 장애의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지급한다.

4. 교육부는 위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과 합의하여 현행 안전공제회 정관을 개정한다.

제46조 【건강진단】

1. 임용시 건강진단은 임용시, 일반건강진단은 년 1회,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실시한다.

2. 교육부는 교육업무로 인해 건강 장애가 우려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요구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건강진단 검진 항목 이외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교육부는 만 35세 이상의 교원이 희망할 시 1년마다 종합검진을 받도록 한다.

4. 건강진단 비용은 교육부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7조 【임시건강진단】

1. 교육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급격한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른 질병이 우려될 경우
- ② 전염병의 발생지역 등에 근무하는 경우
- ③ 근무 중 과로로 인한 질병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건강진단 결과 또는 근무중인 교원이 호소하는 특히 주목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⑤ 원인불명의 건강장애 또는 특이한 질병등이 발생한 경우
-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충분히 갖추어 실시하고, 소요비용은 교육부가 부담한다.

제48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교육부는 교원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교원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49조 【공무상요양】

1. 교육부는 조합원이 건강진단 또는 개인적으로 진찰받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치료비 부담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임용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고혈압 등 순환기질환, 간장질환, 분진, 전염성 호흡기질환, 요통, 관절염, 그리고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스트레스성 질환 등 기타 직업과 관련하여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② 임용시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교육부는 각종 건강진단 결과 채용시 없었던 신체 및 정신결함이 발견되었을 시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 집단적으로 발생한 모든 질병도 이에 포함한다.

3. 관계법령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합과 교육부가 합의하면 이

를 공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간주한다.

제50조 【공무상 요양자 및 질병자의 보호】

1. 교육부는 교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중 재해를 당한 교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추가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장해보상) 교육부는 교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외에 장해급여의 30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다.

② (학자금 지급) 교육부는 교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장애가 심하여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에 직계자녀에게는 학자금을 계속 지급한다.

2. 교원이 건강진단결과 또는 개인적인 의사의 진단결과 법정전염병(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프스, 장티프스, 디프테리아, 유행성출혈열) 및 각종 암 질환, 당뇨병, 간염, 고혈압자로 판명되어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한다.

3. 교육부는 공무상 요양자 및 질병자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간호보조사를 제공한다. 이 때 경비는 교육부가 부담한다.

제 5 장 근로조건

제 1 절 근로시간

제51조 【주5일제】

1. 교육부는 2001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초·중등학교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토요일에 아동·학생 교육이 가능하도록 사회교육망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2. 교육부는 2001년까지 연간 법정 수업일수를 190일 이내로 줄인다.

제52조 【교원의 근로시간】

1. 교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자율출퇴근제(개방적 근무체계)를 정착시킨다.

제53조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

1. 교육부는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를 HR, CA시간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16시간, 중학교 18시간, 초등학교 19시간으로 법제화한다.

2. 원로교사(55세이상)의 주당 수업 시수는 12시간으로 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정원 산정시 원로교사는 0.5인으로 계산한다.

3. 상치교사와 순회교사의 경우 주당수업시수를 적절하게 줄인다.

제54조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 교원에게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교육부는 당해 교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3.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될 때 교육부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

제 2 절 유급휴일 유급휴가

제55조 【자율연수 휴직제 도입】

1. 교육부는 2001년부터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를 실시한다.
2. 교육부는 15년 이상 근무한 교원은 희망자 전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자율연수휴직을 10년 주기로 실시한다.
3. 교육부는 자율연수휴직을 하는 교원에게 교과 연구비로 50만원을 지원하여 명실공히 연구를 통한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6조 【유급 병가 기간 연장】 교육부는 교원이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치료·요양을 해야 할 때, 현행 60일에서 90일까지 유급 병가를 부여한다.

제57조 【노동절 휴일】 노동절(5월 1일)은 휴일로 한다.

제58조 【미사용 연가 보상】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 1월 보수 지급일에 < 미사용연가일수 x 보수일액 x 1.5 >를 지급함으로써 보상한다.

제59조 【특별휴가】

1. 교육부는 교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동 휴가 기간 중 유급휴일이끼여 있을 때는 해당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구분	대상	현행 일수	개정 일수
결혼	본인	7	7
	자녀	1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		1(신설)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6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출산	배우자(처)	1	3
사망	배우자	7	7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7
	자녀	3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신설)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신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5(신설)
탈상	배우자	2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1	1
	자녀	1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1
이사	본인의 거주지 이전		1(신설)
칠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1(신설)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해서 90일간의 간

병휴가를 보장한다.

제 3 절 근무 조건

제60조 【법정 정원 확보 등】

1.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직원의 정원을 2001학년도 까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2. 교육경력 5년 이상의 교원이 대학에 학사편입할 경우, 또는 석·박사 과정에 진학할 경우 정원의 별도관리를 한다.
3. 교육부는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법정 정원수를 확보하여 전임강사의 신분을 보장한다.

제61조 【교과전담교사 증원】 교육부는 교과 전담 교사가 교과의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모든 초등학교에 3학년 이상 1학급당 0.5명씩 배치 하되, 소규모 학교는 통합 운영하여 순회교사를 배치한다.

제62조 【보결전담교사제 운영】 교육부는 유치원·초등학교에 연가, 병가, 공가, 생리휴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보결 전담 교사를 둔다.

제63조 【담임업무 보조교사제 운영】 교육부는 초등학교에 담임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법정정원 외에 담임업무보조교사(조교)를 4학급당 1명씩 둔다. 보조교사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64조 【교원의 잡무 금지】

1. 교육부는 법정장부를 제외한 불필요한 장부(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 학급일지, 교외지도 일지, 요선도학생 지도 일지, 순회지도 일지, 1교사1학생지도 상담일지 등)를 모두 폐지한다.
2. 교육부는 조합이 참여하는 잡무경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65조 【교원의 연구환경 조성】

1. (교원연구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각 교과 단위로 연구실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교육 연구 활동 및 교재 연구 활동 조건을 마련한다.
2. (컴퓨터 지급) 교육부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컴퓨터는 노트북으로 한다.
3. (근거리 통신망 설치) 교육부는 근거리통신망을 모든 학교에 설치하고 각 교육청과 연결하여 전자 결재를 적극 활용하고 교수학습자료개발과 정보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4. (학습보조자료) 교육부는 교원과 학생에게 현대식 학습 지도 보조 자료를 제공한다.
5. (교구관리의 전문화) 교육부는 학교 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교구 설비 및 관리 전문직 용원을 충원하여 각 학교에 배치한다.
6. (소프트웨어 구입 활성화)

① 교육부는 학교에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기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다.

② 교육부는 산하에 교육 자료 연구 및 지원 부서를 두어 교육 현장에 원활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부는 각종 교육용 소프트웨어 목록을 조합과 공동으로 작성 배포하고, 교원이 요구할 때에는 무료로 공급한다.

7. 교육부는 사무자동화기기(팩스, 복사기, 인쇄기, 모뎀 등)를 확충한다.

8. 교원 1인당 1회선의 전화기를 설치한다.

제66조 【연구실적 평정제의 개선】

1. 교육부는 현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하는 연구대회에서 입상하는 자에게 부여한 연구실적평정을 폐지한다.

2. 교육부는 연구실적 평정제가 폐지될 때까지 과도적 조치로서 조합이 개최하는 연구대회에서 입상하는 자에게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하는 연구대회에서 입상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연구실적 평점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제67조 【교원의 여비지급 현실화】 교원의 여비는 현행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서 한 단계 올려 지급한다.

제68조 【이전비 지급】 교육부는 교원의 인사 발령 시 현 거주지와 30km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이사 비용을 지급한다.

제 4 절 교육환경

제69조 【학교 규모의 축소】 학교당 학급수는 초등 24학급, 중등 18학급 이하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1학년부터 축소 모집하되, 2002년 초등 1학년 8학급 이하, 중등 1학년 10학급 이하, 2003년 초등 1학년 6학급 이하, 중등 1학년 8학급 이하, 2004년 초등 1학년 4학급 이하, 중등 1학년 6학급 이하를 모집하도록 한다.

제70조 【학급당 학생수의 축소】

1. 각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가 될 때까지 매년 10%씩 줄인다.

2. 먼단위는 2002년, 읍단위는 2003년까지, 시단위는 2004년까지 30명 이하로 줄인다.

3. 유치원은 연령별로 학급당 유아 수에 차등을 둔다.(만 5세 25명, 만 4세 20명, 만 3세 혼합연령 15명)

제71조 【학교 시설의 개선】

1. 교육부는 아래 시설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학교시설 설비기준법’을 조합과 협의하여 제정한다.

① 필수시설 : 학교시설 설비 규정 제5조 <교사와 원사> 에 규정된 시설 이외에 상담실, 도서실, 교원사택, 온실, 학습자료실, 온수공급시설, 학생회 회의실, 학부모회 회의실을 둔다.

② 실내온도 : 교실의 실내온도는 동절기 섭씨 18-20도, 하절기 25도 이내를 유지한다.

③ 책걸상 : 학생용 책걸상은 학생들의 체형에 맞아야 하며, 5년 주기로 교체한다.

④ 조도 : 각 실의 조도는 450룩스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 창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시설을 한다.

⑤ 식당 :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전체 원생(학생)을 위한 급식실을 두어야 하며 이에는 조리용기구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2000년까지, 중학교는 2002년까지 설치 운용한다.

⑥ 수영장 : 인근 5개교를 기준으로 1개 이상의 수영장을 설치한다.

⑦ 체육관 · 강당 :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체육관 · 강당을 설치한다.

⑧ 특별교실 및 준비실 :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컴퓨터실, 시청각실, 어학실은 학교마다 1실을 두되, 12학급을 초과할 때마다 각 1실을 추가하여야 한다. 또 중고교에는 그 기준수를 적용하되 사회과학실(모둠토의실)을 둔다.

⑨ 학생대의원회실(학생회실) : 학생대의원회실을 두고 동아리방(연합회)을 둔다.

⑩ 보통교실의 설비종목 : <학교교구설비기준 별표5>에 규정된 설비종목 이외에 멀티미디어시설, 책장, 신발장, 전화기, 학생 개인 사물함 등을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⑪ 보건실 : 각 학교에는 보통교실 규모의 보건실 1칸을 설치하여야 하며, 학교의 기준규모(초등학교 36학급 이하, 중학교 24 학급 이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⑫ 학교는 학생들에게 맑은 마실 물(생수)을 제공하여야 한다.

⑬ 방음벽 : 도로와 인접한 학교에는 방음벽을 설치한다.

⑭ 휴게실 : 학교별로 남녀 교사휴게실(갱의실 포함)을 각각 설치한다. 휴게실에는 온돌 또는 침대를 구비하며 소파, 탁자, TV, 난방기, 냉방기 등을 둔다.

⑮ 특수아동이 있는 학교는 반드시 특수교육실을 마련한다.

2. 15년 이상 된 학교의 시설물 일체에 관하여 2000년 12월말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제72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1. 교육부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급식비, 수학여행비, 야

영경비 등을 교육예산으로 충당한다.

2.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교육예산에서 마련하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비치하고 초등학생 전원에게 새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3. 교육부는 2001년부터 현행 중고등학생의 등록금을 50% 경감한다.

제 5 절 교육재정

제73조 【학교회계의 투명성 보장】

1. 교육부는 학교회계의 편성, 집행, 결산, 감사 등 전 과정을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2.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 기부제도를 2001년부터 폐지한다.

3. 교육부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74조 【보통교육 우선 배정】 교육부는 예산 편성시 보통교육예산을 우선 증액한다

제75조 【교육재정의 확보】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재조정해야 한다.

1. 교육부는 교육재정을 2003년까지 GNP 대비 6%수준으로 높이며 그 구체적인 계획을 금년말까지 조합에 통보한다.

2. 현재까지 의무교육 기관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봉급 교부금의 지급 범위를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그 산출근거를 교원의 통상임금으로 확대하여 교원의 봉급액 전체를 국가 부담으로 한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00년까지 내국세 총액의 13.2%에서 15%로 확대한다.

4. 특별교부금을 경상교부금의 10% 규모로 한다.

5. 교육부는 교육세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교육세를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며 교육세의 사용 내역을 조합에 통보한다.

6. 교육부는 예산 삭감을 이유로 1998-9년에 이루어진 학교운영경상비 삭감액을 원상조치하고 2001년까지 표준운영비 100%를 확보한다.

제76조 【교육예산의 편성 및 결산】 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반드시 조합과 협의한다.

제 6 장 교원의 신분 및 전문직성 보장

제 1 절 양성 · 임용 · 보임 · 전보

제77조 【교사양성 및 임용】

1. 교육부는 교사양성 및 임용에 관한 다음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

계법령의 개정안을 2000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2. 조합, 교육부는 올바른 교원의 양성 임용에 대한 원칙과 목적형 양성체계에 기반한 선발·양성·자격·임용제도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참여시킨 ‘교원양성, 임용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결정한다.

① 교육부는 목적형 양성체계를 확립하여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하는 내용으로 개혁한다.

② 교원양성기관의 선발제도는 기본적인 학력평가와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한 적성, 인성평가가 강화된 제도를 마련하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한다.

③ 교육부는 효과적인 학습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 중 학교현장 관찰·연구조사·실습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④ 초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영어·예체능 교과의 교과전담교사 확보를 위한 양성 과정을 교육대학 정규 교과 과정에 설치한다.

⑤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육청과 사학연합체 대표,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사립교원임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개적 임용제도를 도입한다.

⑥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을 금지한다. 단,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초등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교원은 교과전담교사로 정식 임용하고 해당전공교과만 지도한다.

제78조 【근무평정제 개선과 인사기록카드 보완】

1. 교육부는 현행 근무성적을 계량화하여 승진·전보에 반영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종합인사기록카드제를 도입하여 교원의 교직 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2. 교육부는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반드시 종합인사기록카드를 기본자료로 하여 교원의 보직 및 전보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3. 교육부는 종합인사기록카드에 담임, 보직경력, 주당수업시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인사나 포상에 활용한다.

제79조 【가산점 제도 개선】

1. 교육부는 2002년까지 가산점 제도를 폐지한다.

2. 교육부는 현행 가산점제도 중 기존의 가산점 대상 지역·학교·기관에 근무할 경우 복지, 재정, 후생 상의 특별 지원을 한다.

제80조 【부부교사의 전보상 배려】 부부교사의 근무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전보 시에 동일 시·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우선 배려한다.

제81조 【기간제 교사의 임용 조건 및 처우 개선】

1.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를 시·도 교육감(교육장)이 임용하고, 공사립을 막론하고 수요가 있는 학교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한다.

2.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를 병가, 산가 및 연수 등의 휴직 사유에 대해서만 배치한다.

3. 기간제 교사들의 계약기간을 정규교사들의 병가, 산가 1개월 이상의 장기연수, 휴직에 의해 발생한 전 기간으로 하고(임용령에 있는 결원 등의 사유를 명기) 근무하는 전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4. 기간제 교사의 임금은 전 경력을 인정하고, 정규교사에 준하는 호봉체계를 적용한다.

5. 교원의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일 경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1년을 초과할 경우는 정식교사를 채용한다.

6. 모든 국·공·사립학교에서 재직교원이 법정 정원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0년말까지 이를 정식교사로 임용한다.

제82조 【순회 및 보결 교사】

1. 교육부는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목의 순회 교사제를 운영하여 상치 교사를 없앤다.

2. 교육부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보결교사제도를 운영한다.

제83조 【사립 교원의 신분 보장】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폐교, 학급·학과의 축소 또는 폐지로 발생하는 파견교사는 전원 특채하여 공립학교로 임용한다.

제84조 【공·사립/유치원·초·중등과 대학의 교원 교류】

1. 교사가 희망하고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경우 사립에서 공립, 공립에서 사립으로의 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2. 유치원, 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원간에 일정 기간 상호 교류근무를 하도록 2000학년도부터 추진한다.

제85조 【학급활동 지원비 지급】 교육부는 2001년부터 학급활동 지원비로 매일 10만원을 지급한다.

제86조 【교장 선출·보직제】

<전교조안>

1. 교육부는 승진을 위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교장, 교감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교장·교감 선출·보직제를 도입한다.

2. 교장, 교감은 1급정교사로서 교육경력 20년(담임교사 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교직원회의에서 복수 추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

자가 최종 임용한다.

<한교조안>

1. 교육부는 교사의 사기를 양양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현행 교장·교감 선임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그 폭을 넓히기 위해 수석 교사제를 도입한다.

2. 수석교사는 1급 정교사로서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담임교사 경력 10년 이상 포함) 특이한 결격사유가 없는 교사로 하며, 전원 교장·교감에 해당하는 교육행정전문연수 및 기타 직무상 필요한 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말한다.

3. 수석교사제는 수석교사로 구성된 각 학교별 장학위원회의 내신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현행 교장, 교감 보임(선임)제 일부를 변경, 임용권자가 최종 임용토록 한다.

제87조 【장학사(관)와 연구사(관) 제도의 개혁】

1. 교육부는 현재의 장학사(관)·연구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 교육청별로 현직 교사가 중심이 되는 장학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을 지원한다.

2. 교육부 및 교육청에 파견근무하는 교사는 담임교사 경력 5년 이상의 1급 정교사 중에서 선발한다.

3. 선발방법은 종합인사기록카드를 참고하여 각급 학교 교무회의와 학교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교육감이 임용한다. 이때 현장 활동과 실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육부, 각급 교육청의 교사 출신 교육전문직의 비율을 높인다.

5. 교육부나 각급 관청에 파견되는 장학사(관)·연구사(관)은 일정기간 근무 후 원직으로 복귀할 때는 전직과 동일한 직급으로 복귀한다.

제88조 【양호교사의 신분 및 처우 개선】

1.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한다.

2. 연수, 승진 등에 있어서 보건교사와 일반교사의 차별을 없앤다.

제89조 【표창】 교원에 대한 훈·포장에서 유치원·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원의 차이를 없앤다.

제 2 절 휴직·복직

제90조 【휴직제도의 개선】 교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휴직할 수 있다

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현행 봉급의 5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급과 보수성 수당의 50%를 상향 지급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2.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 고용

기간으로 한다.

3. 자녀(휴직신청 당시 4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은 자녀가 4세가 되는 때까지로 한다.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기본급과 보수성 수당의 50%를 지급한다.

5.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6.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7.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수배되었을 때는 구속 또는 수배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91조 【복직】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교육부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는 본인과 합의하여 동등 직급으로 복직시킨다.

제 3 절 징계 · 해고

제92조 【징계 사유 개선】

1.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지나친 포괄적 징계 사유인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삭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고 집단행위금지 위반 조항은 삭제한다. 그 밖의 징계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 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용토록 한다.

2.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준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000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제93조 【해고의 제한】 교육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1.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때 (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3.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단, 임용권자는 휴직기간 만료시점을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

다. 그렇지 아니하였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할 수 없다.

제94조 【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교원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임용권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하여 가산 보상해야 하며,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2. 교육부가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5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절차】

1. 교원징계는 공·사립 교원을 불문하고 교원징계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에 설치하고, 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2.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제출할 때 학교장은 반드시 학교 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징계 요청에서부터 징계 진행 과정 등의 전과정에서 그 자료와 회의록을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제96조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효력】

①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② 취소·무효확인·이행청구의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위원회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경우에 임용권자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교원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제16조 신설)

③ 임금청구의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당해 교원은 민사소송법상 중국판결에 준하여 강제집행 등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4 절 연 수

제97조 【연구활동 보장】

1. 교육부는 교원의 연구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각종 연구비용을 지원하며,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 연수제도를 조합과 협의하여 개혁한다.

2. 교육부는 학술진흥재단 운영시 유치원, 초·중·등 교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한다.

3. 단위학교 및 지역단위 교과별, 주제별 연구모임에 대해 행·재정지원을

한다.

제98조 【교원 연수제도 개혁】

1. 교육부는 교원대학 전문대학원 과정에 준하는 연수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교육부는 조합을 법정 연수기관으로 인정하고, 교육부·교육청 주관 연수 프로그램 편성시 교원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한다.

3. 교육부는 교육부·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자격 연수, 일반 연수, 직무 연수 등을 민간이나 교원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4. 교육부는 교원들의 일반연수 등 재교육 연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교원노조에서 실시하는 자율연수, 각종 세미나 및 교육연구활동에 대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5. 자격 연수와 일반 연수의 점수제를 폐지하고, 합격과 탈락의 요소를 도입한다.

6. 연수이수확점제도는 폐지하고 이수한 연수의 내용과 시간만 종합 인사카드에 기록한다.

7. 교육부는 제반 자율연수비로 연간 교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8. 교원의 국내 대학원 진학과 연구활동은 근무기간과 경력에 포함하고 유급연수 기간으로 인정한다.(단 5년안에 퇴직할 경우 연수기간 중 지급된 보수전액을 환수한다)

9. 교원의 국외 대학원 진학과 연구활동은 근무기간과 경력에 포함하고 유급연수 기간으로 인정한다.(단 5년안에 퇴직할 경우 연수기간 중 지급된 보수전액을 환수한다)

10.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등한 연수기회를 부여한다.

11. 연수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고 연수를 희망하는 교사를 최대한 수용토록 한다. 연수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12. 교육부는 유치원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를 확대하고 초·중등 교원의 연수에 참여시킨다.

13.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어교육연수는 중단하고 영어교육 전공자만 영어교육을 담당토록 한다.

제99조 【부전공 연수의 개선】

1.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개편이나 학교 종류의 개편으로 인하여 과목의 수급에 불균형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부전공 연수를 실시한다.

2. 교육부는 위 부전공 연수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 교사를 위탁하여 타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위 부전공 연수는 공사립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00조 【교원의 문화활동 지원】 교육부는 정부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공간의 입장을 교원들에게 무료 및 할인 혜택을 주고 이를 위해 쿠폰제나 카드제를 실시한다.

제101조 【교원의 교류】

1. 교육부는 국제간 전문 분야의 연수·교류, 문화적 교류, 해외 여행 기회를 확대한다.

2. 교육부는 해외 연수·근무를 위해 여행하는 교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제 5 절 교원의 자율성 보장

제102조 【교사의 전문성 확보】 교육부는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정 및 여건 확보에 힘쓴다.

1. 교육과정의 태두리 안에서 교재의 선정과 개선, 교과서의 선택, 교육방법의 적용에 자율성을 갖는다.

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립하기 위해 교과협의회의 활성화를 보장하고, 교재와 교과서에 대한 선정 및 제반사항은 교과협의회가 결정하도록 한다.

② 수업방식과 평가에 있어서 교사들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2. 새로운 교육과정, 교과서 및 학습지도 보조자료 개발에 교원과 조합이 참여한다.

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한 교과별위원회 위원에 반드시 조합이 추천한 인사가 반 수 이상 임명되어야 한다.

② 실무적인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교과서 제작 관련 교사위원을 실질적인 책임단위인 조합이 추천하는 교원을 반 수 이상으로 선정하고, 교원노조의 교과연구회가 교과서 및 학습지도 보조자료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 현행 국·검인정 발행 교과서제는 자유발행제로 한다.

4. 교과별위원회와 학교별위원회 구성시 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반 수 이상 임명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제103조 【기관·학교평가제 개선】 교육부는 평가에 따른 서열화 및 예산 차등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현행 교육청 평가 및 초·중등 학교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 단위 학교에 대한 평가는 교육환경과 시설 여건이나 교육활동의 질 등에 대해 평가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주관 아래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하며, 평가 결과는 다음 학년도 교육 계획 수립시에 반영한다.

2.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 서비스나 지원 활동의 질을 평가하되, 관내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 가운데서 무작위로 표집된 평가자들이 평가하며, 결과는 교육청 업무 개선에 즉각 반영한다.

3. 교육부는 조합과 평가 전문가, 학부모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만든 평가 척도를 활용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보장한다.

4. 교육부의 정책이나 행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교사단체와 학부모 및 시민단체가 교육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제104조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권 보장】 교육부는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대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권을 보장한다.

제105조 【초중등교육법 20조 3항 개정】 교육부는 교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20조 3항 ‘교사는 법률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를 ‘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로 개정한다.

제 6 절 교원의 시민적 권리 확대

제106조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교육부는 모든 교원들이 교육활동 이외의 영역에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ILO-UNESCO 권고등 국제기준에 맞게 관계법(교원노조법, 정당법, 선거법)을 개정해 2000년도 정기국회 때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 7 절 제도 개선

제107조 【교육정책수립위원회 설치】 교육부는 학제개편, 학사력 개선, 입시제도, 교육과정 개편, 교과서 제도, 교육행정체계, 교육자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부 산하에 조합이 참여하는 교육정책수립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08조 【의무교육의 확대】

1. 교육부는 2001년부터 만 5세아에 대해 유아학교에서 1년간의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만4세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의무교육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교육부는 2001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3년)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2002년부터는 자립형 일반계 사립고를 제외한 모든 사립고(실업계 포함)를 포함하여 공립으로 전환하고, 2002년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3. 교육부는 의무 교육의 무상 범위를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등으로 한다.

4. 의무교육 기관은 후원금, 잡부금 등을 일체 거출할 수 없다.

제109조 【제6차 교육과정 일부 수정】 교육부는 제 6차 교육과정에 대하여 일부 수정고시하여 시행한다.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단위 이수 시간은 최소 이수단위로 변경한다.
2. 국·영·수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총 이수시간의 1/3을 넘을 수 없다.
3.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선택교과목과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교가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신나는 공간으로 바뀌도록 다양한 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실시한다.

제110조 【제7차 교육과정 전면 개편】

1. 교육부는 국민공통교육기관과 기간 학제와의 부조화 문제 등 현행 고시된 7차 교육과정에 대해 조합과 함께 전면 개편하도록 한다.
2.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대해 국가적 통제는 최소화하거나 없음을 원칙으로 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른 교육내용, 과정 편성에 대해 상시 개정, 수시 개편 체제의 유연성을 갖도록 한다.
3. 교육부는 월 1회 체험활동·가정학습의 날을 정하여 실시하고, 수업시수(4시간)에 포함시킨다.
4. 7차 교육과정에 고시된 초등학교 도덕·실과 교과는 타교과에 흡수 통합하고 교육과정 내용을 재조정한다.
5. 7차 교육과정에 정규교과로 도입된 초등 영어교과는 학교재량 또는 특별활동영역으로 설치하여 선택교과로 배정한다.

제111조 【학생의 인권보장】

1. 교육부는 학생권리 선언이 포함된 교육법 개정안을 2000년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 학생처벌에 있어서는 다음이 규정되어야 한다.
 - ① 학생처벌의 적법절차 규정
 - ② 처벌내용 및 근거, 불복절차에 대한 충분한 고지
 - ③ 학생 및 보호자의 변론권 제도화 및 재심청구권 보장
3. 교육부는 두발 및 복장에 관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의사를 수렴하여 교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교육부는 학교선도위원회 규정 준칙을 다음과 같이 개선되도록 지도한다.
 - 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위헌소지가 있는 규정이 개선
 - ② 학생의 기본인권에 반하는 조항의 개선
 - ③ 징계 확정 전단계의 조사과정 등에서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앤다.
5.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언론·출판·집회의 자유 보장)
6. 학생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 권리를 보장한다(학생의 권리와 의무

규정집 제작 제공, 학생자치회 주관의 ‘학생 권리와 의무’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인권’에 관한 학생 연수 등)

7. 교육부는 학생의 신앙에 반하는 의식을 강요할 수 없다.

8. 학생관련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시 학급회와 학생회의 참여를 보장한다.

9. 학칙을 제정할 때는 1989년 유엔에서 제정하고, 1991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정해야 한다.

10.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의 대표를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2조 【학생복지】

1. 남·여학생 탈의실을 설치한다.

2. 식당과 매점의 시설을 현대화한다.

3. 운동시설, 실내외의 휴게시설을 확충한다.

4. 실험 실습 및 소모성 자료는 학교에서 제공하고 비소모성 도구는 학교에서 완비한다.

제113조 【학교자치법 제정】 교육부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자치를 활성화하며, 다음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자치법을 제정해야 한다.

1. 학교 구성원들의 자치 조직인 교사회와 학생회, 학부모회를 학교 자치의 기초 단위로 인정하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2. 학교 자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① 교사회는 학교장을 포함한 전체 교사로 구성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 수 만큼의 대표자를 뽑는다.(교원전체회의)

② 학부모회는 ‘학급 학부모회’를 기초 단위로 한 전체 학부모로 구성하며, 학부모대표는 학부모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한다.

③ 초·중등학교의 학생회는 학급회를 기초 단위로 한 전교생으로 구성하며, 회장단은 학급회와 전교 학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자치 조직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도록 한다.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자치 조직에서 선출된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②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중등학교에는 의결기구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 사항을 존중하고 집행할 책임을 진다.

④ 교육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교원 대

표와 학부모 대표를 동수로 한다.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한을 갖는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산하에 예결산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학사관리위원회, 급식위원회 등의 상설 소위원회를 둔다.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⑦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들의 교육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은 교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⑧ 보직 담당자로서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권한 범위는 적절히 제한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학교장은 인사조치 한다.

⑨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조직에서 소환할 수 있다.

제114조 【연구시범학교의 운영 개선】

1. 교육부는 남발하고 있는 현행 형식적이고 소비적이고 비교육적인 각종 연구시범학교의 지정을 중단하고 조합과 다른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연구시범학교의 개선을 위해 협의한다.

2.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별 연구과제 공모를 시행한다. 학교별로 연구시범학교 운영 계획을 세워 공모하게 하고, 심사에 합격한 학교를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 예산을 지원한다. (현행 개인별 연구과제 공모 사업과 유사한 개념)

3. 모든 시도교육청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주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연구시범학교를 공모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연구시범학교는 시도교육청이 공모하여 운영한다.

4. 연구 시범학교로 지정되는 경우 특별한 예산을 지원하지만, 승진·점수 등 인사상의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5조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교육부는 농어촌 교육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 교육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 농어촌 읍·면 지역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줄인다.

-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우선 줄여 학급 수를 적정하게 유지한다.

2.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폐교 정책을 중지하고 작은 학교를 지원한다.

- 교육부는 학생수가 감소하더라도 분교장으로 격하하거나 폐교하지 아니하고, 학교장을 2-3개교에 겸임 근무하도록 한다.

- 초등의 복식학급 편성을 지양하고, 중등의 상치교사를 해소한다.

- 소규모 학교를 지역사회 문화센터 등으로 사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도 한다.

3.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소규모 초등학교에도 교과전담 교사를 배치한다.

- 소규모 초등학교에 사무직원을 우선 배치한다.

- 교무실에 교무보조원을 배치하여 교사의 잡무를 경감시킨다

- 교육정보화 등 교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우선 지원한다.

4. 농어촌 학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 교사대는 10%이상 도서·벽지 출신 고교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출신지에 우선 발령한다.

- 학교장 추천 전보제도를 폐지하여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한다.

-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역 등급에 따라 기본급의 20%에서 50%까지 지급한다.

- 교원주택을 신·증설하여 농어촌 근무교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제 8 절 사립학교의 공공성 제고

제116조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육부는 다음 사항을 담은 법안을 2000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1.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에 조합이 추천하는 공익 이사가 1/2이상 참여해야 한다.

2. 초·중등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공립, 초·중등학교와 동등하게 심의기구로 해야 한다.

3. 위원의 1/2을 평교수로 하는 교무위원회를 법정 심의기구화 한다.

제117조 【사학법인의 법정 전입금 한도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는 사립학교 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사학법인의 법정 전입금 한도에 관한 법적 근거(학교 운영비의 20%)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2000년 정기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한다.

제118조 【사립학교법의 면직 조항 삭제】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립학교법에 있는 면직 조항을 삭제한다. 이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000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제119조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금 확대】

1.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열악한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을 국·공립에 동등하게 지원한다.

2. 사립학교의 교수기자재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확보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합과 협의한다.

제120조 **【사립학교 교원의 고충 심사】**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000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제121조 **【사립학교 재정 운영 평가제 도입】**

1. 교육부는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사립재정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은 교육청 관계자와 교원노조 추천 공익인사, 사학연합체의 대표를 동수로 구성한다.

제122조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법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고 구성 및 운영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한다.

제 7 장 남녀평등과 모성 보호

제123조 **【남녀평등】**

1. 교육부는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며 모성을 보호하고 여교원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2. 조합과 교육부는 동수로 남녀고용평등위원회를 두며, 교원의 모집과 임용·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 차별이 없도록 심의·결정한다.

3. 교장·교감·부장교사의 임명시 단위학교 교원의 남녀 비율대로 한다.

4. 기관에 근무하는 현장교사 출신 장학위원의 선발시 남·녀 비율대로 한다.

제124조 **【보건휴가】**

1. 교육부는 여성 교원에게 본인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날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생리로 인해 결근했을 때는 생리휴가로 자동 대체하고, 보결전담교사가 특별프로그램(성교육, 보건교육, 진로교육, 환경교육, 통일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2. 임신중인 여성교원은 정기검진을 위해 본인이 청구하는 날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125조 **【산전·산후 휴가】**

1. 교육부는 임신중인 여성 교원에게 90일 이상의 산전·산후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2. 산전·산후 휴가의 적용은 임신 4개월 이상의 분만을 말하며,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한다.

3. 교육부는 난산, 유산, 사산 등에 따른 후유증으로 추가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되면 그 기간만큼 유급휴가를 연장하여야 한다.

4. 교육부는 임신중인 여성 교원의 요구가 있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미한 업무로 배치 전환하여야 하며, 시간외 근무를 시키지 못한다.

5. 임산부의 배우자도 동일한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 한다.

6. (유급 유산휴가)

① 임신 중 여성 교원이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을 하였을 때에는 60일 간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② 30일 간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 이후에도 후유증이 있을 때 교육부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보수의 8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병가를 주어야 한다.

제126조 【직장보육시설확충】

1. 교육부는 2002년까지 단위학교별로 5명 이상의 교사가 원하면 직장보육시설을 병설유치원과 연계하여 반드시 설치한다.

2. 교육부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비를 전액 부담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80% 이상을 보조한다.

3. 교육부는 직장보육시설이 미비하여 자녀를 탁아소에 맡기지 못할 경우에는 보사부 표준보육료에 의한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직장 보육시설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교원에게는 유임하도록 하고 직장탁아소가 있는 학교로 전보(비정기전보)하고자 하는 경우는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

제127조 【수유시간】 교육부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의 청구가 있을 때는 1일 2회, 각각 1시간씩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28조 【육아휴직】

1. 생후 4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교원은 자녀가 만 4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안에서 육아휴직을 얻을 수 있다.

2. 그 기간동안은 근무기간에 포함하며, 월보수의 50%를 지급한다.

3. 육아를 감안하지 않은 전보조치는 본인의 청구가 있을시 시정한다.

제 8 장 유아교육

제129조 【1일 교육활동시간】 유치원의 1일 교육활동시간은 3시간으로 범제화한다.

제130조 【학교 시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

설 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

1. 유희실 :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시설로 설치한다.
2. 화장실, 세면대 : 실내에 유아용 화장실, 세면대를 설치한다.
3. 유치원 자료실 : 유치원 교재·교구를 관리할 수 있는 자료실을 두어야 한다.
4. 운동장 시설 : 초등학교와 함께 사용하는 운동장에도 반드시 유아에게 맞는 시설을 설치한다.
5. 종일반 취침실 : 종일반에는 취침실을 두어야 한다.
6. 냉난방 시설 : 선풍기 · 에어컨 · 온풍기 등 냉난방 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제131조 【유아교육법 제정】 교육부는 다음 사항을 담은 법안을 1999년 정국회에 제출한다.

1. 만5세 아동에 대해 무상공교육을 실시한다.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제를 유아학교로 개편, 일원화한다.
3. 유아학교는 종일제 운영의 독립된 기간학제로 한다.
4. 유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5. 유아교사 양성제도를 개선한다.

제 9 장 실업 교육

제132조 【실업교육체제 개편】

1. 교육부는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기술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제를 다양화(2~5년제)한다.
2. 교육부는 통합형 고교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3. 교육부는 저임금 노동력 공급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공고의 2+1제도를 폐지한다.
4.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정원 확보 방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학 중심의 연계 교육과정(2+2 제도)운영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5. 교육부는 실업계 고교에서 학과의 통합 및 명칭 변경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3조 【자격증 제도 개편과 기능대회 제도 개선】

1. 교육부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질 높고 현장성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능자격 검정 기준을 개정함과 동시에 직업 훈련 기준(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연계성을 높인다.

2. 교육부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3. 교육부는 자격 취득자가 상급학교 진학시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학습결과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교육부는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는 각종 기능대회의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창의력 향상을 위한 실업계 고교생의 축제로 만든다.

5. 교육부는 조합과 협의하여 현행 기능반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제134조 【전문교과 교원에게 현장위주의 연수강화】 교육부는 전문교과 교원의 전공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5년에 1번 12주 이상 현장과건제(해당 분야의 산업체에서 연구)를 실시하여 교원의 실기능력을 향상시킨다.

제135조 【실습수당제 도입】 교육부는 실업계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실업계 교원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보상 방안으로 현재 공업계 교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과교원수당을 실습수당으로 바꾸어 대폭 인상하며, 지급 대상도 상업계 등 전 계열로 확대한다.

제136조 【실업계 고교 수업료 감면】 교육부는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업계 고교 재학생의 수업료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고, 2002년부터는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제137조 【동일계 진학 특별전형 확대】

1. 교육부는 실업계 고교 졸업자에게 계속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동일계 대학 특별전형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교과목 중심으로 전형 방법을 개선한다.

2. 교육부는 실업계 고교 출신으로서 일정한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범위를 확대한다.

제138조 【실업계 고교 투자 확대】 교육부는 실업계 고교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우수 산업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첨단 기술교육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교육부는 실습환경개선을 위해 환경개선비를 확충하고, '실험·실습의 정상화를 위해 '99년도 들어 전년 대비 절반 정도 삭감된(현재의 실험·실습비는 지난해의 59%임)실험·실습비를 원상 회복시킨다.

2. 교육부는 기존 노후 시설의 대체 및 확충비를 확보하여 실험·실습 여건을 개선하고 첨단화된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3. 교육부는 연 1회로 제한되어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자재 수리비는 수리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수리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고, 기자재 폐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4. 교육부는 전통 기술적 가치가 높은 기능·기술교육과 함께 미래 정보화 사회, 신 산업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최신 기자재 도입 등에 우

선 투자한다.

5. 교육부는 실습 조교를 기준에 맞게 증원 배치한다.

제139조 【직업·기술 교육 지원 체계 강화】

1. 교육부는 교육부내에 직업·기술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실업교육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2. 교육부는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 연구센터를 각 교육청 별로 설치한다.

3. 교육부는 실업계 고교의 취업실을 인력은행 지소로 활용하여 직업안정, 직업훈련, 진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망을 확충한다.

4. 교육부는 실업계 고교에 진로·생활지도 상담 전문 교사를 배치한다.

5. 교육부는 실업계 고교의 동아리 활동이나 특별활동을 지원하고 강화한다.

6. 교육부는 실업계 고교 3학년 2학기 현장학습 시 실습할수 있는 산업체를 책임지고 확보한다.

제140조 【산학협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교육부는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차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교육부는 직업교육기금을 조성하고 산학협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2. 교육부는 직업교육을 지원할 산학협동 기구를 만든다.

3. 교육부는 직원을 일찍 퇴근시켜 야간 대학에 보내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

4. 교육부는 직장인을 위하여 주말에만 수업하는 대학과정을 운영한다.

5. 교육부는 사내 대학을 활성화하여 졸업 후 학력을 인정한다.

6. 실업계고교 학생들에게 산업체 견학을 위한 기회를 매년 1회 이상 제공한다.

제141조 【농업·수산업 교육개혁】 교육부는 농업·수산업교육은 농업·수산업의 보호 육성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1. 교육부는 과학 영농·수산업에 걸맞은 최신 시설, 설비를 투자한다.

2. 교육부는 실습장 운영을 정상화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3. 교육부는 농업·수산업계 졸업생들이 농업·수산업 관련기관에 취업할 때 특전을 부여한다.

제142조 【여성의 직업교육 강화】 교육부는 여성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호를 실시한다.

1.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한다.

2.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3. 여성의 전문직으로의 진출 추세에 맞추어 여성취업 유망직종을 적극 발굴한다.
4. 용도제한 등 성차별적 모집채용 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5. 취업의뢰시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것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6. 남학생 또는 여학생으로만 이루어진 실업계 학교의 경우 남녀공학을 확대 실시한다.

제143조 【산업체 경력 인정】 교육부는 현행 40~50% 인정하고 있는 산업체 경력환산율을 동일계 실과교원의 경우 100% 인정한다.

제144조 【실기 교원의 신분 보장】 교육부는 실업계 고교의 실기 교원에 대한 자격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

제 10 장 특수교육

제145조 【장애아동의 의무교육권 확대】 교육부는 3세에서 17세까지의 교육 연령대 모든 장애아동 의무교육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유치원·초·중·고 영역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한다.

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장애유아를 통합 지도하며, 특수유아교사 1인을 의무 배치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입원시킬 경우 각종 지원을 우대한다.

② 모든 초등학교에 특수교육교사의 배치를 의무화한다.

③ 모든 중학교에 특수교육교사의 배치를 의무화한다.

④ 각 시·군·구의 고등학교 중 1학급이상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한다.

2. 특수교육의 양적 질적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해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을 3%이상 의무적으로 책정한다.

3. 특수교육의 질적인 교육확대를 실현한다.

① 특수학교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급당 인원수를 장애종별과 경중을 고려하여 학급당 인원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수학급의 인원수 하한선을 폐지한다.

② 전시행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별, 시·군·구별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활동을 상설화 한다.

제146조 【통합교육의 기반조성】 통합교육의 확대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통합교육의 기반 조성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의무화한다.

2. 통합교육을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제147조 【전문성 제고】 교육부는 특수교육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1. 특수교육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를 확대 실시한다.
2. 특수교육교사의 일반교사 자격증 취득에 있어 일반교사와의 형평성 있는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반학교로 전직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한다.
3. 현행 실시되고 있는 특수학교근무 및 특수학급담당 가산점제도를 폐지하고, 특수교육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관련 규칙을 폐지한다.
4. 일반 교원의 양성과정 및 자격 연수 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강좌를 설치한다.

제148조 【사립학교 운영의 정상화】 특수학교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 특수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현행 국·공립, 특수학교와 비교하여 차등하게 지원되는 특수학교 운영 예산을 공평하게 지원한다.
2. 사립 특수학교의 시설과 학교를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며,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도하며 평가한다.
3. 사립 특수학교의 교육환경 및 제반여건을 평가하여 부실하고 예산운영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립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교육으로 흡수한다.

제 11 장 해직교사 복직과 원상회복

제149조 【전교조 및 교육민주화 관련 복직교사와 임용제외교사의 원상회복】 교육부는 2000년 3월 현재 전교조 및 교육민주화 관련 활동으로 해직되었다가 복직된 조합원과 임용제외로 불이익을 받은 교사에 대해 경력·호봉 인정 등 원상회복조치를 취하고, 징계로 인한 금전상 불이익에 대해 배상한다.

제150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 시행령에 복직교사와 임용제외교사 사항 포함】 교육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 복직교사와 임용제외교사가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151조 【해직교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교육부는 제159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위의 사항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2000년 정기국회에 ‘해직교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한다.

제 12 장 부 칙

제1조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1년 정기교섭 체결 전까지로 한다. 단, 임금협약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제2조 【협약갱신】 조합과 교육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보충협약 및 재교섭】

1.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합·교육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조합·교육부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

제4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법규 및 노동관계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5조 【불이행 책임】 조합과 교육부는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6조 【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조합, 교육부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2000년 ○월 ○일

교육부 교섭위원 ○○○ 교원노조 교섭위원 ○○○
○○○ ○○○
.....

- 교원노조 10대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부 검토의견 -

□ 단체교섭의제로써 단체협약에 반영할 사항

1. 조합활동의 보장

노조 요구안	교육부 안
<p>제4조(조합활동의 보장)</p> <p>1.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 협의에 참가하는 활동과 조합 규약에 의한 정기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참가활동은 교육부(학교장)에 사전통지 후 보장된다.</p> <p>2. 교과 연구와 학급 경영에 관한 토론 등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조합원의 교육활동은 수업과 학사일정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며 학교장에 사전 통지를 한다.</p> <p>3. 교육부는 학교 안에서 분회 전용 게시판의 설치를 보장한다.</p> <p>4. 교육부는 조합의 사·군·구 단위 지회장의 조합활동을 주 10시간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p>	<p>제2조(조합활동의 보장)</p> <p>1. 교원노조와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교원의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p> <p>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 교원노조 조합원이 교원의 근무시간중에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관련협의에 교섭위원으로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당해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근무시간중이라도 이를 할 수 있다.</p>

노조 요구안	교육부 안
<p>제3조(조합활동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 교육부는 조합원이 조합활동 과정에서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p> <p>제4조 (조합원 교육시간 인정) 교육부는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합원의 교육 시간을 월 2시간까지 인정하며 수업과 학사 일정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3. 교육부는 교원노조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협의를 교섭위원으로 직접 참석하는 경우 그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은 학교장으로부터 공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교원복무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p> <p>제3조(조합활동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인정)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전임자 또는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협의를 참여 활동중에 질병·사고등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p> <p>제4조(조합원 교육시간 인정) 당해 학교의 교원노조 조합원이 당해 학교 교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교육을 교원의 근무시간 외에 학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당해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전에 당해 학교의 교원노조 조합원이 당해 학교장의 서면 허가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장은 최소한 월1회 3시간은 이를 허가한다.</p>

노조 요구안	교육부 안
<p>제5조(연수과정에서의 강좌 설정) 교육부는 신입교사 연수 및 교원자격 연수 시 조합이 지정하는 자에게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2-4시간 제공한다.</p>	<p>제5조(연수과정에서의 강좌 설정) 교육부는 바람직한 노동관계형성을 위하여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의 신입교사 연수 및 교원연수과정에 관련 과목을 일정시간 개설·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p>

※ 교육부안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4조는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의견이 대립될 수 있으므로 교원노조에서 수용 곤란한 경우 급변 단체 교섭에서는 논의유보를 제외함

2. 임금인상

노조 요구안	교육부 안
<p>제20조(임금인상) 교육부는 2000년 1월부터 2000년 총액 대비 15.2%를 인상하여 지급한다 <수정안> 교육부는 교원의 보수를 연차적으로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되, 다른 공무원보다 우대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월 5만원씩 4년간 기본급에 추가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한다. 제21조(기말수당 일부와 교직수당의 기본급화)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말수당 일부와 교직수당을 본봉으로 편입시킨다.</p>	<p>제13조(보수인상)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원의 보수를 연차적으로 중견기업수준으로 인상하되, 다른 공무원보다 우대될 수 있는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14조(기말수당 일부의 기본급화)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말수당 일부가 본봉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한다.</p>

노조 요구안	교육부 안
<p>제23조 제1항(가족수당의 인상 및 지급제한규정 폐지)</p> <p>가족수당은 1인당 5만원으로 한다. 부양가족의 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부양의무가 있는 교원에게는 동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p> <p>제23조 제2항(교직수당가산금중 보직교사·학급담당수당 인상)</p> <p>교육부는 보직교사 및 학급담당교사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2001년에는 각각 10만원으로 인상한다.</p> <p>제22조(교원보수체계 개편)</p> <p>교육부는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협약체결 직후 교원노조가 참여하는 호봉체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년감축으로 인한 손실분(3년치) 보전과 최고호봉 도달기간의 단축 등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교원보수규정을 마련하여 2001년부터 시행한다.</p>	<p>제00조(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p> <p>교육부는 부양의무를 가진 교원이 근무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p> <p>제15조(교직수당가산금중 보직교사·학급담당수당 인상)</p> <p>교육부는 2001년도에 보직교사 및 학급담당교사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을 각각 6만원과 8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한다.</p> <p>제00조(교원보수체계 개편)</p> <p>교육부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생애수요를 반영하는 생활급 보수체계도입 등 교원보수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p> <p>제00조(일·숙직비 인상) : 교육부 추가안</p> <p>교육부는 일·숙직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한다.</p>

3. 표준수업시수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노조 요구안	교육부 안
<p>제16조(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p> <p>1. 교육부는 주당 표준 수업시수를 교과·특별·재량시간을 포함하여 유치원 18시간, 초등학교 19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설정한다.</p> <p>2. 교육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표준 수업시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초과수업수당을 신설하여 시간 당 1만5천 원씩 지급한다.</p>	<p>제16조(표준수업시수 및 초과근무수당)</p> <p>1.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교급별로 교과·특별·재량활동시간 등을 포함하여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도록 한다.</p> <p>2. 교육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수업시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을 추진한다.</p> <p>※ 종전 교육부안 제16조 및 제18조 통합</p>

4. 유치원, 초등교원과 중등교원간 수당 차별 철폐

노조 요구안	교육부 안
<p>제26조(유치원, 초등, 중등교원의 수당차별 철폐)</p> <p>중등교원들에게 학교운영비에서 지급되는 연구비수당을 유치원·초등 교원들에게 지급하여 수당의 차이를 없앤다.</p>	<p>제00조(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수당차이 해소)</p> <p>교육부는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수당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등교원에게 학교별로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는 연구비와 초등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가산금 등이 동일 수준으로 지급되도록 한다.</p>

5.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노조 요구안	교육부 안
<p>제55조(자율연수휴직제 도입)</p> <p>1. 교육부는 15년 이상 근무한 교원의 최대 20%를 대상으로 봉급 및 보수성 수당의 50%를 지급하는 자율연수 휴직 제를 2001년부터 실시한다.</p> <p>2. 교육부는 2001년부터 자율연수 휴직을 하는 교원의 수만큼 교원 정원을 늘린다.</p>	<p>제19조(자율연수휴직제)</p> <p>교육부는 15년이상 근무한 교원중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은 교원이 국내 교육·연수기관에서 자율연수할 경우 봉급 및 보수성수당의 50%를 지급받고 휴직할 수 있는 자율연수 휴직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p>

6. 사립교원의 신분보장(2000.5.3, 장관면담시 동일 내용 건의)

노조 요구안	교육부 안
<p>제83조(사립교원 신분보장)</p> <p>교육부는 사립학교의 폐교, 학급·학과와 축소 또는 폐지로 발생하는 과원교사는 전원 특채하여 공립학교로 임용한다.</p>	<p>제19조(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p> <p>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학급 수 감축 등의 사유로 과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시·도의 교원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채용하도록 권장한다.</p>

7. 육아휴직

노조 요구안	교육부 안
<p>제128조(육아휴직 기간의 근속인정 및 보수 지급)</p> <p>1. 생후 4년미만의 자녀를 가진 교원은 자녀가 만4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안에서 육아휴직을 얻을 수 있다.</p> <p>2. 그 기간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월보수의 50%를 지급한다.</p> <p><수정안> 교육부는 육아휴직 전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간은 월보수의 50%를 지급한다.</p>	<p>제00조(임신·출산·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p> <p>교육부는 교원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중 최초의 1년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권장한다.</p>

8. 자녀학비보조수당

노조 요구안	교육부 안
<p>제24조(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p> <p>교육부는 교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만3세 이상 유치원 자녀, 대학생 자녀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성회비 해당 액 전액 보조한다.</p>	<p>제00조(교원의 대학원 학비 소득공제) : 교육부 대체안</p> <p>교육부는 교원의 대학원 학비의 근로소득 공제를 추진한다.</p>

□ 단체교섭의제에서 제외된 사항

9. 복직교사 원상회복(2000.5.3, 장관면담시 동일 내용건의)

노조 요구안	교육부 안
<p>○교육부는 1800여명의 복직교사의 해직기간에 대한 호봉인정, 연금 합산, 교육경력인정 및 임금보상 등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16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상정한다.</p> <p>○교육부는 복직교사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포함되도록 한다.</p> <p>○교육부와 교원노조는 각각 차관 및 부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복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p>	<p>○“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해직교사(미입용교사 포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되고, 일정수준의 보상이 결정된다면 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p>

10. 교육정책협의회 구성(2000.5.3, 장관면담시 동일 내용 건의)

노조 요구안	교육부 안
<p>○교육부는 교원노조는 각각 장관 및 위원장을 대표로 6인씩 구성되는 “교육정책위원회”를 월1회 개최하고 교육 현안과 교육정책에 대해 협의한다.</p>	<p>○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내에 구성되어 있거나 앞으로 구성되는 법정·비법정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에 교원노조 등 교직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p> <p>(제14차 교섭소위 합의서 제3항)</p> <p>○교육부는 교원노조등 교직단체가 교육부내에 구성 또는 구성될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여하기 전이라도 단체교섭의제에서 제외된 3개(교원법정정원확보, 교과전담교사 확보, 연구대회 점수부여)사항에 대한 교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일정을 교원노조에게 별도로 제시하기로 한다.</p> <p>(제15차 교섭소위시 교육부측 제안사항)</p>

교원노조요구안 공식 검토의견

I. 집계표

(단위: 건)

기 준	단체교섭협약안				단체교섭이 아닌 방식으로확인할 사항
	계	추가제안사항	제17차 교섭시 축조심의 합의	축조심의 미진행 사항	
교육부 최종검토안 (조문수)	47	12	18	17	4
교원노조 제안안	61	12	21	28	4

※ 전문 1건 포함

II. 추가 검토사항

□ 단체협약으로 추가제안 사항 (12건)

- ① 교원보수체계개편 (안 제10조, 노조안 22조1항)
- ② 초등교원과 중등교원간 수당차이 해소 (안 제12조, 노조안 26조)
- ③ 초과수업수당 지급 (안 제14조제2항, 노조안 21조)
- ④ 대학생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안 제15조, 노조안 24조)
- ⑤ 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 (안 제16조, 노조안 23조1항)
- ⑥ 일·숙직비 인상 (안 제17조, 노조안 23조6항)
- ⑦ 교통비 인상 (안 제18조, 노조안 25조1항)
- ⑧ 교원의 대학원 학비소득공제 (안 제20조)
- ⑨ 무주택 교원의 주택 전세자금 지원(안 제21조, 노조안 28조1항)
- ⑩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 (안 제31조, 노조안 83조)
- ⑪ 배우자의 출산휴가(안 제37조, 노조안 125조5항)
- ⑫ 임신·출산·육아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안 제38조, 노조안 128조 1·2항)

□ 기 교육부가 제안한 사항중 제외한 사항 (4건)

- ① 당초안 제4조 (조합원 교육시간 인정, 노조안 5조1항)
- ② 당초안 제10조 (조합비등 일괄공제)
- ③ 당초안 제12조 (교섭시간)
- ④ 당초안 부칙 제4조 (관계법령의 적용, 노조안 부칙 제4조)

□ 단체교섭이 아닌 방식으로 교육부가 확인할 사항 (4건)

- ①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내에 구성되어 있거나 앞으로 구성되는 법정·비법정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에 교원노조등 교직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②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교원노조등 교직단체와 단체교섭이 없는 분기에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한다.
- ③ 이번 단체교섭에서 교원노조가 제안한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이견이 대립될 수 있으므로 당분간 논의를 유보하고, 이후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개최되는 초·중등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또는 단체교섭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
- ④ 교육부는 해직교사(미임용교사 포함)가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일정수준의 보상이 결정된다면 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Ⅲ. 교육부와 교원노조간 2000년도 단체협약(안)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한국교원노동조합은 헌법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 교육부안 제1조(자체요구), 미합의

본 단체협약은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한국교원노동조합(이하 “교원노조”라 한다) 그리고 국·공립학교 교원인 교원노조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본 단체협약과 각 시도 교육감 및 교원노조(교원노조의 규약에 의한 시도 단위의 내부조직을 포함한다)간에

체결된 단체협약간에 내용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이 시도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한 본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제2장 조합활동

제2조(전임자) : 교육부안 제6조, 노조안 제6조제1항, 미합의

① 교원노조의 규약에 의한 중앙조직에서 전임으로 종사할 전임자의 규모는 교육부장관이, 시도 단위 조직에서 전임으로 종사할 전임자의 규모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자의 규모는 교육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활한 조합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결정한다.

제3조(교원노조 사무실 제공) : 교육부안 제7조, 노조안 제7조제14항, 미합의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규약에 의한 중앙조직이 사용할 전용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요액을 2001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한다.

제4조(조합활동의 보장) : 교육부안 제2조, 노조안 제4조1·2·3항, 미합의

①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아닌 교원노조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 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 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관련협회의 교섭위원으로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당해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교원의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② 교육부는 교원노조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협회에 교섭위원으로 직접 참석하는 경우 그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은 학교장으로부터 공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교원복무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제5조(조합활동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인정) : 교육부안 제3조, 노조안 제4조제5항,미합의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전임자 또는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협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조(연수과정에서의 강좌 개설) : 교육부안 제5조, 노조안 제5조제2항,

미합의

교육부는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의 신입교사 연수과정 등 교원연수과정에 관련 과목을 일정 시간 개설·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교육행정·연수기관의 시설 이용) : 교육부안 제8조, 노조안 제7조제23항, 미합의

교원노조가 교육행정·연수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자료제공 협조) : 교육부안 제9조, 노조안 제11조, 미합의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조하되, 교육부는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협조한다.

제3장 보수근무조건·후생복지

제9조(보수 인상) : 교육부안 제13조, 노조안 제20조, 미합의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원의 보수를 연차적으로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되, 다른 공무원보다 우대될 수 있는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10조(교원 보수체계 개편) : 노조안 제22조제1항, 추가사항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생애수요를 반영하는 생활급 보수 체계 도입 등 교원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을 한다.
제10조(교원수당 일부의 기납입) : 교육부안 제13조, 노조안 제20조, 미합의**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말수당 일부가 본봉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초등교원과 중등교원간 수당 차이 해소) : 노조안 제26조, 추가사항

**교육부는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수당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등교원에게 학급당 학급수당, 초등교원에게 기납입을 일부 추가 소정교원에게 기납입을 초과수당인정 등 도입 수당으로 기납입과 한다.
제12조(초·중·고교수당 일부의 기납입) : 교육부안 제13조, 노조안 제20조, 미합의**

제13조(초·중·고교수당 일부의 기납입) : 교육부안 제13조, 노조안 제20조, 미합의

교육부는 보직교사 및 학급담당교사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2001년도에 각각 6만원과 8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한다.

제14조(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 교육부안 제16조, 노조안 제21조, 제53조제1항1호, 1항: 제17차 소위 합의, 2항: 추가사항

①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교 급별로 교과·특별·재량활동시간 등을 포함하여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도록 한다.

② 교육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수업시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원·학원연합회 등의 교육수업시수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무원수업시수」 제정을 원천적으로 철폐하여 추진한다.**

제15조(대학생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 노조안 제24조, 추가사항

교육부는 대학생 자녀를 둔 교원에 대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 1인의 학비(학원비)에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의 합계수입을 초과하도록 보조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철폐하여 추진한다.

제15조(기숙사당 지급소액 지원) : 노조안 제24조제1항, 추가사항
주는 부양의무를 가진 교원이 근무장소상 민간학교 또는 공립학교 민간 부양가족에 대한 기숙사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철폐하여 추진한다.

제16조(일속직비 지원) : 노조안 제23조제6항, 추가사항

교육부는 일속직비가 현실화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18조(교통비 인상) : 노조안 제25조제1항, 추가사항

교육부는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가 월 2만원 인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18조(주거비 지원) : 교육부장 제18조, 노조안 제25조, 제27조 소위 합의

교육부는 교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이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등에게 권장한다.

제20조(교원의 대학원 학비 소득공제) : 추가사항

교육부는 교원의 대학원 학비의 근로소득공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20조(주부비 교원의 주택임대차급 지원) : 노조안 제25조제1항, 추가사항

교육부는 주부비 교원의 주택임대차급지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천적으로 일반회계가 지원하는 장학사업 등에서의 상환보조금으로 이차순이 임차료 포괄 지원한다.**

제20조(교원연수비 지원) : 교육부장 제20조, 노조안 제25조제1항, 제27조

교육부는 향후 교원연수 경비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등에게 권장한다.

제23조(산업체 경력교원 등의 임용전 경력 인정) : 교육부안 제33조,

노조안 제143조, 제17차 소위 합의

교육부는 산업체경력이 있는 교원 및 유사경력이 있는 양호교사등의 교원 임용전 경력이 적정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중앙 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24조(공무상 재해인정) : 교육부안 제17조, 노조안 제49조제1항제1호, 제17차 소위 합의

교육부는 교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5조(교과연구실) : 교육부안 제21조, 노조안 제65조제1항, 제17차 소위 합의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서 각 교과단위의 연구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해당 시·도의 학교시설계획에 교과단위 연구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기존의 평면계획을 변경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시도 교육감에게 권장한다.

제26조(노트북 컴퓨터 지급) : 교육부안 제22조, 노조안 제65조제2항, 제17차 소위 합의

교육부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컴퓨터의 일정량을 노트북 컴퓨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2단계 교육정보화종합계획에 반영한다.

제27조(소프트웨어 보급대책 마련) : 교육부안 제23조, 노조안 제65조 제6항1·3호, 제17차 소위 합의

교육부는 교육기관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증의 면세 추진 등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보급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28조(사무자동화기기 확충) : 교육부안 제24조, 노조안 제65조제7항, 제17차 소위 합의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팩스, 모뎀, 복사기, 인쇄기 등의 사무자동화 기기를 단계적으로 배치하도록 시도 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29조(부부교사의 시도간 인사교류) : 교육부안 제26조, 노조안 제80조, 제17차 소위 합의

교육부는 시도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부부교원이 희망하는 동일 시도 내에서 근무할 수 있게 시도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도 교육감에게 권장한다.

제30조(퇴직교원 포상기준) : 교육부안 제27조, 노조안 제89조, 제17차 소위 합의

교육부는 퇴직교원에 대한 정부포상시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포상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한다.

제31조(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 노조안 제83조, 추가사항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에게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학급수 감축 등의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당해 사립학교 교원 수당에 차등이 없는 한류유치원 장려금으로 교원수당 하향조정을 할수 없다.

제31조(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 교육부안 제83조, 노조안 제83조(1)항, 개정

교육부는 15년이상 근무한 교원중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은 교원이 국내 교육연수기관에서 자율연수할 경우 봉급 및 보수성 수당의 50%를 지급받고 휴직할 수 있는 자율연수 휴직제 도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33조(여성교원 보건휴가) : 교육부안 제29조, 노조안 제124조제12항, 제17차 소위 합의

교육부는 여성교원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신한 때에 검진을 위한 경우 또는 매 생리기에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도 교육감등에게 권장한다.

제34조(임신중인 여성교원의 보호) : 교육부안 제31조, 노조안 제125조 제4항, 제17차 소위 합의

교육부는 임신중인 여성교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각급 학교장이 수업과 학교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모성 보호를 위한 배려를 하도록 시도 교육감등에게 권장한다.

제35조(여성교원 출산휴가의 적용) : 교육부안 제30조, 노조안 제125조 제2항, 제17차 소위 합의

교육부는 여성교원의 출산휴가가 임신 4개월이상의 분만·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포함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등에게 권장한다.

제36조(출산휴가 기간의 연장) : 노조안 제125조제1항, 제17차 소위 합의

교육부는 임신중인 공무원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줄 수 있는 법령개정이 추진되는 경우에 동 법령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7조(배우자의 출산휴가) : 노조안 제125조제5항, 추가사항

교육부는 임신중인 공무원의 배우자에게도 일정기간의 출산휴가를 줄 수 있는 법령개정이 추진되는 경우에 동 법령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7조(임신중인 공무원의 배우자에게의 출산휴가 조항) : 노조안 제125조 제5항, 추가사항

교육부는 교원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학교 직할실을 관할교육청의 교원직으로 학교 업무를 차임없이 수행하도록 시·도 교육감에게 권장한다.

제39조(이행조치의 촉구) : 교육부장 제39조, 노조장 제39조, 제17차 소위 합의

교육부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급 학교장이 수업과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일 1시간씩의 육아시간을 허용하도록 시·도 교육감등에게 권장한다.

제40조(불필요한 장부폐지) : 교육부안 제20조, 노조안 제64조제1항, 제17차 소위 합의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내에 불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도록 시·도 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4장 보칙

제41조(이행책임) : 교육부안 및 노조안 부칙 제5조, 제17차 소위 합의

① 교육부와 교원노조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는 본 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에 의거 동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42조(단체교섭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효력인정) : 교육부안 제11조(자제요구), 미합의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협약에서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사항은 본 단체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유효기간) : 교육부안 및 노조안 제1조, 미합의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2조(협약갱신) : 교육부안 및 노조안 제2조, 제17차 소위 합의

교육부와 교원노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

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지속된다.

제3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 교육부안 및 노조안 제3조, 미합의

교육부와 교원노조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증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협약서의 보관) : 교육부안 및 노조안 부칙 제6조, 제17차 소위 합의

본 단체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여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00. 6.

교육부장관 문용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부영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임태룡

- 교원노조와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서(전문) -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한국교원노동조합은 헌법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본 단체협약은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한국교원노동조합(이하 "교원노조"라 한다) 그리고 국·공립학교 교원인 교원노조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본 단체협약과 각 시도 교육감 및 교원노조(교원노조의 규약에 의한 시도 단위의 내부조직을 포함한다)간에 체결된 단체협약간에 내용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이 시도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한 본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제2장 조합활동

제2조(교원노조 사무실 제공)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규약에 의한 중앙조직이 사용할 전용사무실 임차비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한다.

제3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아닌 교원노조 조합원이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교원의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는 교원노조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협의를 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은 학교장으로부터 공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교원복무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제4조(조합활동중 사교의 공무상 재해인정)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전임자 또는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협의를 직접 참여하

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연수과정에서의 강좌 개설)

① 교육부는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교육부가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의 신입교사 연수과정 등 교원연수과정에 일정시간의 교원노동관계 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을 추진한다.

②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노동관계 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노조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제6조(조합비등 일괄공제)

① 교원노조 조합원의 급여지출권한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교원노조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월정액 조합비를 매월 공제하여 급여 지급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교원노조가 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교원노조는 조합원의 월정액 조합비를 매월 일괄 공제하여 지급받자 할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월정액 조합비일괄공제동의서와 매월 공제할 월정액 조합비 액수, 신규가입 및 탈퇴 조합원의 명단 및 입금해야할 금융기관의 예금구좌를 급여지급일 10일전까지 해당 조합원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 일괄공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노조의 일괄공제 의뢰의 지연, 착오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교원노조가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본인이 소속 학교의 장에게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지 않을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은 조합비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자료제공 협조)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3장 보수근무조건후생복지

제8조(보수 인상)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원 보수를 연차적으로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되도록 추진하되, 다른 공무원보다 우대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확보한다.

제9조(교원 보수체계 개편)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생애수요를 반영하는 생활급 보수체계 도입 등 교원 보수체계 개편안 마련을 추진한다.

제10조(기말수당 일부의 기본급화)

교육부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말수당 일부의 본봉편입을 추진한다.

제11조(초등교원과 중등교원간 수당 차이 해소)

교육부는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수당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등교원에게 학교별로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는 연구비와 초등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가산금 등이 동일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교직수당가산금 중 보직교사·학급담당 수당 인상)

교육부는 보직교사 및 학급담당교사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6만원과 8만원으로 인상한다.

제13조(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① 교육부는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교별로 교과·특별·제량활동시간 등을 포함하여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한다.

② 교육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수업시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초과수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제14조(대학생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교육부는 대학생 자녀를 둔 교원에 대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 1인의 학비(국립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반액수준)에 상당하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지급을 추진한다.

제15조(보건활동수당 지급)

교육부는 양호교사에 대하여 월 3만원의 보건활동수당을 신설한다.

제16조(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

교육부는 부양의무를 가진 교원이 근무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별거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제17조(일·숙직비 인상)

교육부는 일·숙직비의 현실화를 추진한다.

제18조(교통비 인상)

교육부는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의 월 2만원 인상을 추진한다.

제19조(이전비 지급)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등의 소속교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이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교원의 대학원 학비 소득공제)

교육부는 교원 본인이 대학원에 수학할 경우 학비를 근로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21조(무주택 교원의 주택전세자금 지원)

교육부는 무주택 교원의 주택전세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교원공제회가 시행하는 전세자금 용자액을 상향조정하고 이자율이 인하되도록 지도한다.

제22조(교원연수경비 지원)

교육부는 시·도교육감 등에게 향후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연수경비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산업체 경력교원 등의 임용전 경력 인정)

교육부는 산업체경력이 있는 교원 및 유사경력이 있는 양호교사등의 교원 임용전 경력이 적정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제24조(공무상 재해인정)

교육부는 교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5조(교과연구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서 각 교과단위의 연구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당해 시·도의 학교시설계획에 교과단위 연구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기존의 평면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노트북 컴퓨터 지급)

교육부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컴퓨터의 일정량을 노트북 컴퓨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2단계 교육정보화종합계획에 반영한다.

제27조(소프트웨어 보급대책 마련)

교육부는 교육기관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증의 면세 추진 등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보급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제28조(사무자동화기기 확충)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에게 각급 학교에 팩스, 모뎀, 복사기, 인쇄기 등의 사무자동화 기기를 단계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제29조(부부교사의 시·도간 인사교류)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감에게 소속 교원중 시·도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부부교원이 희망하는 동일 시·도내에서 근무할 수 있게 시·도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30조(퇴직교원 포상기준)

교육부는 퇴직교원에 대한 정부포상시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과 대학교

원의 포상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한다.

제31조(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에게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학급수 감축 등의 사유로 과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시도의 교원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 하도록 한다.

제32조(자율연수휴직제)

교육부는 15년 이상 근무한 교원 중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은 교원이 국내 교육연수기관에서 자율연수 할 경우 봉급 및 보수성 수당의 50%를 지급 받고 휴직할 수 있는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을 추진한다.

제33조(여성교원 보건휴가)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등에게 여성교원이 임신한 때에 검진을 위한 경우 또는 매 생리기에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34조(임신중인 여성교원의 보호)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등에게 임신중인 여성교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각급 학교장이 수업과 학교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모성보호를 위한 배려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35조(여성교원 출산휴가의 적용)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등에게 여성교원의 출산휴가가 임신 4개월 이상의 분만·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포함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출산휴가 기간의 연장)

교육부는 임신중인 공무원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줄 수 있는 법령개정이 추진되는 경우에 동 법령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7조(배우자의 출산휴가)

교육부는 임신중인 여성의 배우자에게도 일정기간의 출산휴가를 줄 수 있는 법령개정이 추진되는 경우에 동 법령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8조(여성교원의 육아시간)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 등에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교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급 학교장이 수업과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일 1시간씩의 육아시간을 허용하도록 한다.

제39조(불필요한 장부폐지)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 등에게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내에 불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보칙

제40조(소요예산 반영)

교육부는 본 협약의 내용중 교원의 보수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2001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41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 교육부와 교원노조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는 본 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 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에 의거 동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③ 교육부는 본 단체협약의 내용중 교육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 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2조(협약갱신)

교육부와 교원노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중에 어느 일방도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효력이 지속된다.

제3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교육부와 교원노조 쌍방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협약서의 보관)

본 단체협약서는 이를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여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교육부와 교원노조는 1999년 7월1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6차례의 교섭관련협의, 22차례의

교섭소위원회, 4차례의 본교섭위원회에서 교섭의제와 관련된 논의를 충분히 거쳐, 단체협약의 의제와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간에 최종 합의한 후, 2000.6.10 “교육부와 교원노조간 단체협약(안)”에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가진 양 당사자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였는 바, 금번 단체협약체결 절차를 마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한다.

2000. 7. 3

교육부장관 문용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부영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임태룡

이 일 권

서울교육대학교 졸업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 한국교원노조 사무차장

현 서울군자초교 교사

교원노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단체협약 체결을 중심으로)

펴 낸 곳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펴 낸 이	위원장 이 남 순
초판발행일	2000년12월12일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전 화	(02)761-4526
팩 스	(02)780-6448
Homepage	www.FKTU.or.kr/research
